

김 용 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1962년 제정 문화재보호법 연구

200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최 윤 정

# 1962년 제정 문화재보호법 연구

김용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최윤정

# 인 준 서

최윤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 사 위 원 김 용 철 인

심 사 위 원 송 미 숙 인

심 사 위 원 홍 선 표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이 논문에서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그 형성과정과 문제점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일제강점기의 일본 문화재보호 제도의 생성과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법의 성격을 내용과 역사적 배경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 문화재 보호정책을 제도와 개선이라는 두 방향으로 고찰해봄으로써 우리 문화유산의 보호와 계승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주는 일은 지극히 중요한 국가적 과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와 서구 열강의 문화재 약탈과 한국전쟁으로 문화재의 대량 파괴가 자행되었고, 그간의 만성적인 도굴과 도난, 특히 1960년대 이후 개발 위주의 경제 정책때문에 우리의 문화재는 그동안 가혹한 수난을 당해 왔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의 법령에 대해 살펴보면, 1910년 공포된 「향교(鄕校)재산관리규정」이 그 시작이라 하겠다. 그 다음으로는 사찰에 한정된 법이기는 하나 그 내용에는 문화재보호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 부분적으로 언급된 「사찰령(寺刹令)」이 1911년 9월 1일 제정되었으며,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1916년), 1933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의 제정은 많은 유물과 유적을 등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령으로 ‘보물’ 지정의 시작이라 하겠다.

이 보존령은 1945년 해방 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해 오다가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이 마련됨으로써 폐지되고, 그 때로부터 1982년에 이르기까지 20년간 이 법률에 의하여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존관리가 이루어져 온 셈이

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이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의해 악용된 보존령과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모방함으로써,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라는 운영상의 허점과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우리의 문화재보호법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앞으로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외국의 선진정책을 조사, 수용하는 측면이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이해하고 적용시킬 수 있기 위해서 전문인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재환수를 위한 다양한 방법모색 및 박물관의 사회적 책무와 시민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통일을 대비한 북한과의 문화적 협력을 통해 우리 문화재의 범위를 북한, 해외소재로 넓혀 그 관리와 귀속문제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안을 위한 법 개정과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은 중언부언(重言復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문화재는 역사와 문화를 대변해주는 귀중한 자료로서 우리 민족과 국가의 귀중한 공동유산이다. 조상의 온갖 지혜가 함축되어 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역사이자 긍지이다. 그러므로 현재뿐 아니라 미래 이 땅에서 살아갈 후손들도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현재에, 구체적 보존계획과 법적 장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의 성립배경과 현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문화재보호의 가장 주요한 실천항목이다.

# 목 차

## 개요

I. 서론	1
II. 해방 전 문화재보호 관련 법령	5
1. 사찰령	7
2. 고적 및 유물보존 규칙	12
3.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15
III. 1962년 문화재보호법의 제정경위와 내용상 특징	21
1. 제정 경위	21
2. 내용상 특징	24
1)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의 계승	24
2) 일본의 1950년 제정 문화재보호법 수용	27
IV. 1962년 제정 문화재보호법의 문제점	33
1. 「문화재」 용어의 사용	34
2. 지정문화재 목록의 형성	35
3. 국보와 보물의 상징성	37
4. 법적 보호 밖의 문화재	40
V. 결론	42

## 참고문헌

## ABSTRACT

## 부록

# I. 서론

문화재란 인류문화 활동의 소산으로 문화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정의된다.<sup>1)</sup> 우리나라에서 일제시기의 고적 및 명승의 개념을 넓혀 문화재라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것이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 이전 시기에도 다양한 문화재 보호제도가 있었으며, 그 문화재보호법의 영향관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법률로는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 1933년)」<sup>2)</sup>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에는 유물이나 유적 등 문화재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기이며, 자주적 근대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문화재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할 점이 많다.

이에 비해 일본은 이미 1897년 「고사사보존법(古社寺保存法)」, 1919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史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法)」을, 1929년에는 개인 소유의 문화재를 포함한 「국보보존법(國寶保存法)」, 1933년에 「중요미술품등보존에관한법률(重要美術品等の保存に關する法律)」 등을 단계적으로 제정하면서 문화재에 대한 인식제고와 보존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문화재보호법의 공포와 시행 역시 우리보다 앞선 1950년부터 시작했다. 또한 일본은 앞서 언급한 공식화된 법제도 이전에도 이미 문화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메이지(明治, 1868-1911년)시대 이후 서양 근대 문물이 도입되고 근대적 사상과 인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

1) '문화재'라는 용어는 1950년 일본에서 사용된 이래, 한국에서도 1962년 문화재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해방 전 한국에서는 유물, 고적,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으로 각기의 개념으로 불려졌다.

따라서 체계적인 문화재보호 법령과 미술행정 제도들이 도입될 수 있는 시대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선진적 일본의 문화재보호 개념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입시기가 그들의 식민지로 전락한 일제시기인 점을 볼 때 이익과 상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화재보호와는 다른 식민지 통치적 목적이 내포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60년 이미 메이지시대의 문화재보호 관련 제도부터 1950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까지를 제도의 도입, 내용, 통계, 자료 등을 소상히 정리해 놓은 『文化財保護の歩み』이 발간되었다.<sup>2)</sup>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연구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화재의 관련법이나 관련행정을 정리해 놓은 수준이다.<sup>3)</sup> 즉,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관련법령을 개정의 변천과 함께 정리하고,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의 행정적인 진행과정만을 살피고 있을 뿐 일본인들의 조사부터 한국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제도의 형성배경과 법제정의 의도, 일본의 문화재보호법과의 비교 연구는 미약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를 위해 보호제도의 문제를 언급한 글과 보호제도의 형성과정을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sup>4)</sup> 문화재보호법의 의미를 검토하고 그것이 가진 문제점을 점검하려는 노력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도들 역시 문화재보호법의 형성과정을

---

2) 『文化財保護の歩み』, 文化財保護委員會, 1960.

3) 이러한 논문으로는

전재경, 『문화유산법제개선방안 연구』, 법제연구원, 2001.11.

정문교, 『문화재행정과 정책』, 지식산업사, 2000.

황현탁, 「우리나라의 문화재보존관리체계」, 『법제』 11권, 1982. 4, 45-58쪽.

오세탁, 「문화재보호법연구」, 단국대학교 박사청구논문, 1982. 논문 등이 있다.

4) 이러한 논문으로는

배형일, 「신화 속 고토(故土)복원을 위한 유적 탐색」, 『일본의 발명과 근대』, 도서출판 이산, 2006, 247-284쪽

정영목, 「문화재에 관한 한일간의 갈등 -그 역사와 인식의 차이」 『법학』 44권 제3호, 서울대학교, 2003. 9, 67-90쪽.

박인균, 「한국문화재보호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청구논문, 2001.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문화재보호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실례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sup>5)</sup>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재 정책에 대한 법적 접근과 일제 강점기의 문화재수탈과 관련한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연구와 접근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의 제도적 변천과 상호 영향관계, 성립배경과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 연구한 예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이 일제시기 제도의 답습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 성립배경과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도를 만들기 위한 사전연구와 진행과정에 따라 문화재보호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고, 이것이 문화재보호법의 문제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법의 근거가 어떤 점에서 부정적인지를 구체적으로 파헤치고, 긍정적인 부분은 수용할 수 있는 자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합리적인 연구와 법적 개정이 부족하다. 이미 식민지시기에 이루어진 일본의 조사 보고서들이 오늘날 한국학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참고자료로 이용되고 있고, 전쟁과 경제개발, 도시화로 인해 파괴되거나 훼손된 유물·유적들이 그 보고서에 의존해 복원되고 있는 실정을 인식한다면, 좀 더 면밀한 평가를 통해 앞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잘 보존, 복원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 문화재 보호정책을 제도의 성립배경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이라는 두 방향을 중심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 문화유산의 보호와 계승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문화재보호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시기가 일제강점기라는

---

5) 예를 들면 박인균의 「한국문화재보호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정부의 정책 중 문화재보호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문화재보호정책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살피고, 개선방안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출되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그 문제의 근원과 발생배경에 대한 고찰은 거의 없다. 또한, 최근에 출간된 배형일의 「신화 속 고토(故土) 복원을 위한 유적 탐색」은 메이지(明治) 시기 일본인이 한반도에서 행한 유적 조사와 유물 관리의 정치적 이용 등을 근대일본의 정체성 형성과정에 나타난 제국건설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그러나 일제시기만을 초점을 두어 연구하여 시대에 있어 국한되어 있으며, 문화재보호에 대한 제도적 측면의 고찰은 1916년 「고적및유물 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만 간략히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점을 유념하여 그 이전인 대한제국기의 문화재 관련 제도를 간단히 살펴보고, 한국의 문화재보호의 형성과정의 상한선을 1911년의 「사찰령(寺刹令)」을 시작으로 그 내용과 적용범위 등을 살펴보았다. 같은 시기 일본에서 진행되었던 문화재보호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일본의 문화재보호와 식민지 문화의 제도적 차이를 고찰하여, 일본이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제도화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사찰령을 일본에서 먼저 시행된 1897년의 「고사사보존법」과 비교·고찰하였고,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1916년의 「고적및유물보존규칙」과 유사한 내용으로 3년 뒤 일본에서 1919년에 실시한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을 비교하여 그 내용의 차이를 살펴보겠다. 또한 식민지시기의 마지막 보호제도인 1933년 제정된 「조선보물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식민지 조선에서 실시된 문화재 관련정책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해방 후 문화재보호를 위한 노력과 1962년 법률로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문화재보호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그 제정에 있어 「조선보물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체계를 도입한 점과 그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그대로 답습되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을 고찰하겠다. 그리고 밀접한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논의되는 일본의 1950년 제정 문화재보호법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우리 문화재 보호의 법제화의 문제점과 개선점의 단서를 찾고자 한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봄으로써 그로 인한 현재 문화재보호의 제도적 허점과 용어와 명칭의 문제 등을 다루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와 매우 빈번하게 비교 평가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 문물(文物)이라고 표기하는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문화재(cultural properties), 즉 자산의 개념으로 문화를 인식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기존의 ‘문화재’는 용어 역시 재고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 II. 해방 전 문화재보호 관련 법령

메이지(明治)시기(1868년-1911년) 초 일본은 조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일본내에서 조선의 역사, 지리, 풍속 등에 대한 다수의 저술이 출판되고, 조선은 일본에서 건너온 사람들로 인해 경성과 인천, 부산 등에 학교가 설립되고, 신문이 발행되기도 하였다. 또 조선어 연구가 활발해지고, 특히 조선의 고미술품을 수집하고 조사하는 사람이 등장한다.<sup>6)</sup> 이 시기 조선은 고미술과 유물의 개념이 없었을 때였고, 이렇듯 조선에 관심을 가진 일본의 학자들의 방문으로 인하여 고고학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7)</sup> 그들의 수집과 연구를 위한 노력은 계획적이고 치밀해서, 19세기 말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까지 대륙진출과 함께 한국과 만주지역 일대의 고고학적 연구와 자료, 그에 따른 수집유물이 상당한 양에 이르렀다. 지금까지도 그들이 축적한 연구 자료와 소장품에 의존하여 우리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점으로도 구체적이고 정교한 그들의 연구량을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sup>8)</sup>

일본의 문화재 대부분이 한국, 중국과의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

6) 藤田亮策, 「朝鮮古文化財の保存」, 『朝鮮學報』 第1號, 1951. 5, 248쪽.

7) 이시기 일본의 고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선으로 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선에 대한 관심이 커졌던 때이다. 러일전쟁(1905년)의 전에는 야기 쇼자부로(八木裝三郎)가, 후에는 시바타 토키에(柴田常恵), 이마니시 타츠오(今西龍諸)가 조선에 건너와 조선역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미술, 고고학 관련 조선사 분야의 새로운 사실이 쓰여졌다. 藤田亮策, 「朝鮮古文化財の保存」, 『朝鮮學報』 第1號, 1951. 5, 248~250쪽 참고.

8) 일본인 학자 세키노 타다시(關野貞), 타니이 세이니치(谷正濟一), 쿠리야마 슌이치(栗山俊一) 등이 1915~1935년의 20년간에 걸쳐 낙랑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고적을 주로 조사하고 조선총독부의 후원 아래 발간된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는 주요 문화유산들의 사진·지도·그림 등을 수록하고 있어 우리나라 고고학, 미술사학을 연구하는 기초자료로서 아직까지 이용되고 있다. 이 자료를 토대로 경복궁은 1990년부터 2009년 까지 20년 동안 5단계로 나누어 복원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의 광화문 또한 『조선고적도보』의 ‘광화문 실측도면’ 등을 근거로 복원을 시작하였다. 이 외에 송례문, 창덕궁의 인정전, 석굴암 등 많은 문화유산이 이 자료의 사진을 통해 복원되었을 정도로 유물복원의 기본 자료가 되고 있다.

은 역사적·정치적·학술적 목적에 의해 두 나라의 문화재를 파악, 수집, 연구하는데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서구의 신학문으로 자리 잡은 고고학, 미술사학 등이 일본으로 전해지면서 큰 관심 학문이 되었고, 많은 학자들이 식민지 조선을 자신들의 학문을 위한 첫 대외 실험장으로서 선택하였다. 일본은 한국의 풍부한 문헌자료를 발굴하고, 그것을 토대로 식민지 사회 지배를 연구하였다. 또한 발굴과 도굴을 통해 획득한 유물들은 고고학과 미술사학의 연구대상이 되었고, 문화적 가치를 지닌 고가의 사유자산으로서 일본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게 되었다.<sup>9)</sup> 그리하여 우리의 많은 문화유산들이 일본인들에게 수집되고, 일본으로 유출되었다. 이처럼 일본의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은 긍정과 부정의 이중적 양상을 띠면서 다양한 제도를 통해 문화재에 대한 정책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첫 사례가 1910년 4월, 한일병합 6 달 전에 제정된 「향교재산관리규정(郷校財産管理規程)」이다. 이 시기는 대한제국기였지만, 1905년 을사조약 체결이후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지배를 하던 때이므로, 우리 스스로가 만든 규정이라고는 보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명목상이나마 조선영토 내에 문화재 관리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근대적인 법령이라 할 수 있다.<sup>10)</sup>

한편 일본은 자국의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1880년에 내무성에서 ‘고사사보존금(古社寺保存金)’을 신사나 사찰에 지원하였고, 1888년에는 궁내성에 ‘임

9) Edwin Reischauer, *Japanese Archeological Work on the Asiatic Continent in 1937 and 1938*,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4 1939 87-98쪽. ; 정영목, 「문화재에 관한 한일간의 갈등-그 역사와 인식의 차이」, 『법학』 제44권 제3호, 서울대학교, 2003. 9, 77쪽. 재인용

10) 전8조 부칙(8條附則)으로 구성된 이 향교재산관리규정은 각 조문의 규정내용으로 보아 향교재산의 경제적 관리와 경영에 중점을 두고, 향교를 파악한다든지 또는 그의 문화적가치의 유지 활용에 목적을 둔 법령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제2조 향교재산을 자의로 처분하지 못한다는 규정, 제6조 향교재산원부(郷校財産原簿)를 만들어야 할 것을 의무화 한 규정은 향교의 보호 관리를 위한 실질적 효과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초유의 문화재보호법으로 보는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 향교의 문화재를 그들의 의도대로 파악, 관리, 수집하겠다는 일본의 숨은 의도가 보이는 첫 법령이었다. 그 이전, 광무(光武) 11년(1907) 7월 30일에 ‘성벽처리위원회 관한 건(城壁處理委員會에 關한 件)’이 내각령(內閣令) 제1호로 제정되었지만, 그 내용이 ‘성벽의 훼손(毀撤) 기타 이에 관련한 일체사업을 처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직접적으로 문화재인 성벽의 보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세탁, 『일제의 문화재정책- 그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1996, 20쪽.

시보물취조국(臨時寶物取調局)'을 설치하였다.<sup>11)</sup> 이미 이때 일본은 '보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조선 문화재에 대한 일본의 관심과 자국의 문화재보호 정책은 점차적으로 구체화되고 제도화되었다. 특히 한일병합 이후 조선 문화재는 지배국인 일본의 입장에서 보호라는 명목 하에 조사와 발굴이 가속화되었다. 그 제도의 시작이 1911년에 공포된 '사찰령'이라고 하겠다.

## 1. 사찰령(寺刹令)

사찰령(寺刹令)은 일본의 고사사보존법(古社寺保存法, 1897년)에 준하는 법령으로서 사찰의 보존이라는 미명아래 조선총독 하의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 1909년 대한제국의 위축이라는 명목 아래 일본의 전문가들이 대거 조선으로 들어와 유물을 수집하고 조사하였다.<sup>12)</sup> 그리고 1911년 조선총독부는 오래된 사찰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사찰령을 공포한다.<sup>13)</sup> 이 령으로서 일본은 주지의 임명과 사찰의 종무를 모두 총독부가 관장하게 하고 전국의 사찰을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sup>14)</sup> 그리고 이 제도의 시행은 일본

11) 1888년 '임시전국보물취조국'은 구키 류이치(九鬼隆一)와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을 중심으로 하여 사찰의 보물 21만점 이상의 보존과 공개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총 215,091점의 미술품의 역사적·예술적 평가를 행하기 위한 대규모인 조사가 실시되고, 파악·정리·분류·기록되었다.

12) 한국정부탁지부건축소(韓國政府度支部建築所)로부터 세키노 타다시(關野貞), 타니이 세이니치(谷正濟一), 쿠리야마 슌이치(栗山俊一) 3명이 고건축조사(古建築調査)라는 축탁의 이름으로 수행자와 기술자 아리무라(有村) 등과 함께 9월 19일부터 12월21~27일까지 약 100일간 조선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경성에서 신의주 간은 '경의철도'를, 경성에서 부산 간은 '경부철도'를 이용하여 주로 철도선로를 따라 경주, 부여지방을 조사하였다. 주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유명한 고적 및 예술적 유물을 조사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 해에는 평양 교외 대동강 변에서, 후에 낙랑군 시대의 것으로 판명된 석암리(石巖里) 고분을 발굴조사 하였고, 경부지역 서악동(西岳洞)에서는 신라시대의 고분을 발굴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예술의 변천을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라는 4기로 나누었다. 廣瀬繁明, 「初期の朝鮮建築・古蹟調査とその後の文化財保護」, 『考古學史研究』第1号, 2003.10, 58쪽.

13) 조선총독부 제령 제7호로서 공포되었다. 원문은 『조선법규집람』, 조선총독부, 1923. 참고.

14) 사찰령 시행규칙을 만들고 사찰 운영의 내규인 사법(寺法)을 제정해 사찰 운영의 틀을 구축한 조선총독은 이로 인해 본사 주지를 통한 한국불교 통제권 장악 했으며, 주지에 대한 인사권과 사찰에 대한

의 많은 학자들이 조선에서 고(古)건축물을 자유롭게 조사함으로써 수많은 사찰소유의 문화재가 일본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sup>15)</sup> 따라서 합병초기, 일제의 각종 식민정책 중 문화재 수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사찰령이며, 실제로 수많은 불교유물이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다.<sup>16)</sup>

사찰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는 사찰의 병합, 이전, 폐지, 명칭의 변경 시 조선총독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조는 사찰의 기지(基址) 및 가람의 배치 등을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하고 있고, 제3조는 사찰령으로 인해 시행된 본말(本末)관계 등 사법(寺法)을 본사(本寺)에서 정하고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사찰의 통제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를 짐작 할 수 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반드시 사찰에 주지를 두도록 하여 그 주지는 그 사찰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주지는 결국 전조항에서 규정한 본말관계에 의해 본사의 명을 받기에 일본에 유리한 정책을 펴기 위한 제도로서 이용되었다. 또한, 사찰령에 의해 총독의 철저한 규제를 받게 된 사찰들은 규정의 해석여하에 따라 다양한 피해를 입었다. 예를 들어 5조의 ‘사찰에 속하는 토지, 삼림(森林), 건물, 불상, 석물, 고문서화(古文書畫), 기타의 귀중품은 조선

---

재산권을 확보하였다. 그것은 한국불교를 관료화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본사 주지에게 인사권과 재산권이 집중됐으며 임야 농지 등 불교 재정의 손실도 적지 않았다. 사찰령이 규정한 재산제도는 주지의 통제에 초점을 맞추어 일제가 친일적인 주지에게 재산 관리권을 부여하고 불교재산을 개인 소유로 넘기는 일 또한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15) 1912년 9월 1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조선총독부에서 ‘고적조사’라는 이름으로 상기 3명이 다시 촉탁되었다. 이들은 고려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한반도 최고(最古) 목조건축’이라 생각한 부석사 무량수전과 조사당도 이 시기에 조사하였다.

16) 이 시기 유출되었던 중요 문화재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리사터의 석조부도(菩提寺 石造浮屠, 보물 351호)가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1956년 이화여대에 입수되었고, 금동미륵보살반가상(金銅彌勒菩薩半跏像, 국보 제78호)은 1912년 일본인에 의해 약탈되어 테라우치 총독에게 진상되는 수모를 겪고,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한송사 석조보살좌상(寒松寺石造菩薩坐像, 국보 124호)은 1912년 일본인 와다유지(和田雄治)가 일본으로 밀반출한 것을 1965년 6월 한일협정에 따라 이듬해 5월 돌려 받았다. 굴불사지사면석불(掘拂寺址 四面石佛, 보물121호)은 1915년 보존상 머리와 오른쪽 협시보살상 전체를 떼어가 현재 훼손된 부분은 행방불명 된 상태이다. 이구열, 『한국문화재 수난사』, 돌베개, 1996.

총독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라는 조항은 오히려 총독의 허가가 있다면 처분 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악용되어 많은 유물들이 유출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그리고 사찰령 시행규칙에는 사찰에 속하는 토지, 삼림, 건물, 불상, 석물, 고문서, 고서화, 범종(梵鐘), 경권(經卷), 불기(佛器), 불구(佛具), 기타 귀중품 등은 목록으로 작성하여 주지 부임 이후 5일 이내에 조선총독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를 어길 때에는 사찰에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사찰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된 사찰의 목록이 우리나라 문화재 목록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찰령 시행으로 주지(住持)의 임명과 해임에 대한 인가를 총독부에서 얻어야 하고, 그 임기도 3년으로 제한되게 되었다.<sup>17)</sup>

그러나 조선총독부에는 문화재 정책을 제도적으로 전담하는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의 문화재와 관련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1910년 조선총독부 훈령 제2호에 규정된 '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의 내용을 확인해 보더라도 문화재관리 행정부서는 찾을 수 없다.<sup>18)</sup> 결국 식민지시대 초기 '문화재보호정책'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자명한 일이라고 하겠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키노 타다시(關野貞)가 조선전역을 답사하며 작성한 『한국건축조사보고』(1904년)는 이 「사찰령」의 제도적 보호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으로 작성된 그의 '조선 유적일람'은 조선 유물을 대다수 소장하고 있는 사찰의 목록을 수록하고 있어, 일본의 문화재 탈취의 지표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식민지 조선의 「사찰령」에 앞서 이와 관련한 일본의 법령으로는 14년 전인 1897년(明治30년)에 제정된 「고사사보준법」이 있다. 우선 고사사보준법이 제정된 목적과 시대배경은 우리의 사찰령과는 많이 다르다. 1929

17) 이로 인해 관습법적으로 이어져 오던 전통적인 산중공의제도(山中公儀制度)는 무시되고, 그 당시의 독립 운동가들의 사찰이용조차도 봉쇄되기에 이르러 사찰의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18) 학무국 학무과에서는 학교, 유치원, 도서관 그리고 기타 학제에 관한 사항과 교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편집과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편집, 반포, 검정 및 인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년 국보보존법이 제정되기까지 약 30년에 걸쳐 국가적인 문화재보호 법률로써 존속되는 고사사보존법은 황폐한 자국의 사찰을 보호해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제정되었다. 또한 메이지 20년대(1887-1897년)에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의 유럽 견문과 구키 류이치(九鬼隆一) 등의 유럽 사찰은 당시 일본과는 다른 유물의 공공성과 공적재산의 개념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sup>19)</sup> 유럽에서 귀국한 류이치는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모든 사찰유물은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0)</sup> 이러한 주장의 노력은 1897년 「고사사보존법」이 제정되고, 1900년 궁내성이 제실박물관제를 제정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sup>21)</sup>

법률 제49호로 공포된 고사사보존법은 어디까지나 보존이라는 사업을 제1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조, 2조, 4조, 5조에는 특별보호 건축물과 국보, 신사 또는 사찰이 그 대상이 되며 내무대신(內務大臣)의 감독 하에 두었음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 6조, 7조는 사찰이 내무대신의 명으로 관립 또는 공립의 박물관에 국보를 출품해야하는 의무를 두고, 이럴 경우 국고에서 보급금(補給金)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고사사보존법이라는 명분에 걸맞는 보존금과 보급금은 연간 15만~20만엔 이내로 제16조에 의해 책정되어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제13조에는 감수자가 그 감수하는 곳의 국보

19) 유럽 국가들의 교회가 그들의 교회유물을 사적으로 또는 교회 차원에서 매매,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을 견문한 구키 류이치는 귀국 후 일본의 모든 사찰·유물을 사찰에서 스스로 매매, 양도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20) 일본에서 제실박물관의 설립은 곧 문화재를 국가가 관여하는 공적 성격을 부여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것은 또한 유형문화재를 종교적인 것이나 역사적인 것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미술품으로서의 개념과 성격을 지닌 대상으로 취급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때문에 향후 일본의 박물관들은 역사박물관이 아닌 미술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했고, 문화재에 관한 보호법령도 단순히 자국의 종교와 역사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닌 미학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미술(미술품)보호법령의 성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정영목, 「문화재에 관한 한일간의 갈등-그 역사와 인식의 차이」, 『법학』 제44권 제3호, 서울대학교, 2003. 9, 68쪽. 참고

21) 제실박물관의 성립에 앞서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의 주도 아래 설치된 「임시전국보물취조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만여점의 미술품을 파악, 정리, 분류, 기록하여 자연스럽게 일본에 미술사라는 신학문을 출현하게 만들었다. 텐신은 이 기초적인 자료를 토대로 그가 초대 교장직을 맡은 도쿄미술학교에서 1890년부터 일본 최초로 일본미술사 수업을 강의했고, 1900년 파리만국박람회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일본미술사 개설서 발간의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를 훔치거나 훼손, 은닉할 경우와 제14조 감수자가 태만하여 국보를 망실하였을 경우에 부과되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부칙 제18조, 19조는 이러한 대상의 사찰이 아닌 경우까지 보급금의 지급이나 보존의 범위로 넓은 항목으로 주목할 만하다.<sup>22)</sup>

「사찰령」과 「고사사보존법」과의 성격을 비교하여 보면 우선, 제도의 이름에서도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오래된 사찰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고사사보존법과는 달리 조선의 사찰령은 사찰 전체에 대한 통제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고사사보존법은 일본 내에 보존해야 할 사찰의 수리 및 보존을 지원하는 조항으로 이루어진 반면, 조선총독부의 사찰령은 조선 사찰 통제에 중점을 둔 조항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고사사보존법의 제1,2,3조는 사찰의 유지, 수리에 대한 내용이지만, 사찰령은 모두 사찰의 병합이전, 폐지, 배치, 운영 등에 대해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를 어길 시 벌금에 대한 부분도 명시해 두었다. 이러한 사찰령의 내용은 고사사보존법이 일본에서 시행된 후에 식민지 조선에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찰이라는 대상과 보존을 한다는 명목만이 같을 뿐, 사찰문화재 관리의 공통점을 찾아보기엔 어렵다.

근대 입법으로서 제도화 한 일본의 고사사보존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정책이 강화되면서, 일본에서는 1911년 12월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협회’가 발족되었다.<sup>23)</sup> 그리고 이즈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일본에 의해 유적, 유물의 고적조사가 일단락 지어졌고, 1915년 그 조사 결과들을 모아 기록한 서적이 발행되었다. 이후 1916년엔 5개년 계획으로 지속적인 고적과 유물 등을 위한 조사와 이를 뒷받침 해 줄 「고적및유물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

22) 제19조의 항목은 1919년에 삭제되었으며. 1913년 종교국은 내무성에서 문부성으로 옮겨졌다. 제1과, 제2과는 1928년에 종무과, 고사사보존과로 개정되어 소관은 고사사보존과가 되었다. 그리고 1928년에 보존과로 개정되었다.

23) 고사사보존법은 그 대상을 고사찰로 한정하고 있어, 사적이나 유물·명승·천연기념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책을 위한 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 제정되었다. 1910년부터 1919년 3.1 만세운동까지는 명분상으로는 무단(武斷)통치 시기였으나 내용적으로는 실상 일본의 체제를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시키려는 이른바 내지연장주의(內地延長主義)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sup>24)</sup> 그러므로 국내의 법제도를 도입하여, 강제로 식민지에 적용시키는 일반적인 동화정책을 실시하면서, 그 법제도를 식민지에 맞추어 변형시킴으로써 조선인을 차별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sup>25)</sup>

## 2.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

유럽에서 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함께 새로운 인문사회과학의 학문들도 탄생되었다.<sup>26)</sup> 그러나 이러한 학문들은 20세기의 많은 유럽 국가들이 자국 문명의 우월성을 입증하려는 자료로 악용하고 식민지배를 위한 통치사관의 도구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20세기 서로 경쟁하듯 박람회를 개최하고,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을 설립함으로써 지배국의 우월한 문명에 대한 인식을 대중에게 인식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일본 역시 식민통치의 대외적 효과를 선전하기 위하여 1915년 총독부에서 조선물산공진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현재의 경복궁 자리에서 박람회장과 미술관을 갖추고 일본관 오리엔탈리즘의 재현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물관, 미술관, 박람회 등의 전시를 통하여 기획, 조작, 재생산 되어진 조선과 일본의 역사를 그들이 원하는대로 식민지 조선 민족에게 인식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역시 조선물산공진회는 행사가 끝난 후 조선총독부 박물관

24) 테라우치(寺內正毅) 조선총독은 1911년 제국회의에서 조선총독의 입법권의 일부를 부여한 제령권(制令權)의 행사를 승인받았지만, 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체제를 조선에 적용시키는 내지연장주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25) 최석영, 『일제의 동화이데올로기의 창출』, 서경문화사, 1997, 서론.

26) 고고학, 인류학, 미학, 미술사학, 종교학, 민속학 등이 신종의 학문으로 과거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관으로 탈바꿈되었고 일본은 사회 교육을 위한 전시를 하고자 고적의 과학적 조사를 스스로 행하고 조사 연구에 의해서 얻은 것을 공개하는 방침이었다.<sup>27)</sup> 따라서 일본은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진열할 공식적인 문화재수집의 필요하였다. 조선총독부박물관(1913년)의 창설과 경주박물관분관(1915년) 등의 진열장을 채우기 위해 도굴과 밀매의 성행을 부추기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 일본은 1916년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을 제52호 총독부령으로 제정, 공포하고 「고적조사위원회규정」을 만들었다.<sup>28)</sup> 전8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이 규칙은 그 이전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고적과 유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가운데 보존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명칭과 종류, 현황과 관리 보존방법 등을 조사하여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는 법제도로써 문화재에 대한 정의와 보존규정을 둔 최초의 규정이라도 하겠다.

고적및유물보존규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1조에는 고적의 정의를 상세한 예시를 통해 사실(史實)에 관련된 유적이라고 규정하였고, 연대(年代)를 거친 역사, 공예 기타 고고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을 유물이라고 정의하였다. 2조에서는 조선총독부 별기양식의 「고적 및 유물대장」을 비치하고 고적과 유물 중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조사와 등록을 의무화했으며, 제3조는 고적 혹은 유물을 발견하는 자는 발견당시의 상황 그대로 지역경찰서장에게 3일내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서장 또한 즉시 조선총독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에 의해 파악된 유물은 고적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 및 보존상황에 대한 심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규칙 제3조에서 제7조에 이르기까지

27) 조선 총독부 박물관은, 테라우치(寺內) 총독의 이상(理想)에 의해서 경복궁에 안에 만들어져 근정전(勤政殿)·사정전(思政殿)·수정전(修政殿)·경회루(慶會樓) 등과 함께 공개하였다. 즉, 박물관임과 동시에 조선의 정궁을 자연 공원으로 만들어 보였다. 총독부 박물관은 문화의 변천을 보여주고자 하는 역사적 자료를 진열하지 않고, 대륙 문화(조선)와 일본의 문화와의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藤田亮策, 「朝鮮古文化財の保存」 『朝鮮學報』, 第1號, 1951. 5, 259쪽.

28) 물론 일본의 명목은 이러한 도굴과 밀매의 성행을 막고자하는 데 있다고 했으나, 이 보존규칙으로 인하여 사찰뿐만이 아닌 더 많은 고적과 유물들을 직접 통제하고 점령할 수 있었다.

모든 문화재보호실무가 경찰관서에 의해 관리 집행된다는 점이다. 또한 조선총독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경무부장 및 경무총감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어 당시의 헌병경찰제도에 의한 강압적 문화재정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역시 실질적인 업무의 관장을 경찰조직이 갖고 있었던 것이다.

1916년 제정한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과 비교할 수 있는 일본의 법률로는 1919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을 들 수 있다. 이는 일반 사적이나 천연기념물의 보존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제정된 것으로서 6개 조의 짧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조는 사적명승천연기념물에 대한 내무대신(內務大臣)의 지정 제도를 규정하고, 제3조는 현상변경의 허가, 제4조는 환경보존에 관한 규정이다. 현상변경,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지방장관에게 권리를 주어 관리하게 하여 국립공원 내의 도로 개발 등 많은 관광개발 사업의 규제가 강화되었다. 제5조 지정 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비용을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지방공공단체의 관리를 권장했다.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지만, 운용상으로는 오히려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관리가 원칙이 되었다. 보조금은 시설의 보존, 유물수복 등에 폭넓게 지급되었다. 이 법률의 내용은 1950년에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의 사적명승천연기념물관계 규정에 계승되었다.

고적및유물보존규칙과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의 두 법령의 차이를 비교해 본다면, 고적및유물보존규칙을 조선 식민지에 제정 적용시킨 3년 후 일본에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으로 좀 더 완성된 법령을 제정한 것이다. 고적및유물보존규칙에서 우선 그 대상이 고적과 유물로 한정되어 있지만, 일본의 법에서는 그 보존 대상이 더욱 넓어져 사적과 명승, 천연기념물까지도 그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범위의 확대는 1933년 다시 우리나라에서 이 둘을 합한 내용으로 발전되어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고적및유물보존규칙의 관리주체에 있어서는 경찰부장이 그 담당을 하고 있으나, 일본은

지방장관과 지방공공단체로 현실적이고 전문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조선의 경우는 유물대장을 작성하고 보관, 수집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한다면, 일본의 경우 대상을 보호 관리하는 기능으로 확대하고 지원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3.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

1921년 일제는 다시 조선의 문화재를 보호·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총독부에 고적조사과를 설치하였다. 고적조사과에서는 명승과 천연기념물 등의 조사와 보존에 관한 업무와 함께 박물관에 관한 사항도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1930년대 초 문화재 관리를 위한 진일보한 법령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1933년 8월 9일에 제정되어 해방 후까지 지속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이다.<sup>29)</sup> 이 법은 기존의 고적및유물보존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당시 일본 본토에서의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과 1929년 제정된 국보보존법(國寶保存法)의 문화재 보호관련 법규들을 종합한 것으로 일본법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시대배경을 보면 식민지정책의 규제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정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법령은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도 지속해서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보존령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1조, 2조에 역사적 혹은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유물을 보물로 지정하고, 학술자료가 될 수 있고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고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제2조에서는 보물·고적·명승·기념물은 조선총독부

29) 조선총독부 제령 제6호로 제정, 전24조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총령(總令)의 제137호 규정에 의해 동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은 이하 '보존령'으로 약칭하겠다.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에 자문(諮問)하여 조선총독부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되지 아니한 것이라 하더라도 패총, 고적, 사지(寺址), 기타의 유적으로 인정하여, 조선총독의 허가 없이는 발굴 혹은 현상의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는 보존대상이 되는 유물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어서, 종래보다는 한층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보존제도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제5, 6조는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유물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거나 행위를 금지,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 4, 18조는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의 조사를 위해 발굴 혹은 장애물의 변경 등을 허가에 의해 가능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두고 있다. 이 법령에서도 조선총독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줌으로써, 총독부가 자유롭게 유물을 조사, 수집, 반출 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하였다. 제8, 9조는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유물이 멸실, 훼손될 경우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하며, 조선총독명(命)에 의해 관공립 박물관, 미술관의 전시에 요청될 경우 대여해야 할 의무를 두고 있다. 이 경우 국고에서 보조금을 주며, 보물의 멸실(滅失)이나 훼손의 경우에도 보상을 명기하고 있고, 제10, 11조의 경우는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도 현소유자가 같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지방의 공공단체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였으며, 도지사에게는 직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제13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통해서도 이전과는 달리 조선총독의 체계적인 관리 체제로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다. 제16조에서는 조선총독이 보물 등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게 하였고, 제17조에서는 사찰 소유의 보물은 차압할 수 없는 국가의 보물로 규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으로 알 수 있듯이 이 보존령은 그 대상을 명승과 천연기념물까지 확장하였고, 일본 「국보보존법」의 ‘국보’에 갈음하는 ‘보물(寶物)’ 제도를 두었다.<sup>30)</sup> 기존의 대장에 등록되어진 유물을 가치평가에 따라 ‘보물’로

등록하였다.<sup>31)</sup> 더욱이 유물을 대장에 단순히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총독부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의 자문을 받아 총독이 보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전의 고적및유물보존규칙의 내용 및 형식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sup>32)</sup>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보존회의 시행규칙이 발표되었는데, 보존회의 제1부는 보물과 고적을, 제2부는 명승과 천연기념물을 지정 보존하는 업무를 분장하였다.<sup>33)</sup> 유물의 대상을 그 성격에 맞게 분류하고 보존업무의 고유영역이 서로 다름을 인정한 최초의 규칙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사찰 건조물을 중심으로 유물의 가치평가를 내리던 구법에서 범위를 넓혀 서적, 회화, 조각, 공예품과 같은 미술품에 대한 보물지정으로 그 가치평가를 확대하여, 보존대상을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에만 한정하지 않고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물까지로 삼은 점과 경승지·동물·식물·지질광물 등 기타 학술연구의 자료가 될 수 있는 범위까지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서 지정할 수 있게 한 점은 분명 획기적인 발전이다.<sup>34)</sup>

그러나 이 제도에서 주목할 만한 문제점으로는 보물 등의 지정유물의 공용제한(公用制限)에 관한 규정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이다. 그 하나는 제5조의 ‘현상변경 및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규제’와 제6조 규정인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필요시설을

30) 그러나 일본에서는 ‘국보’, 우리나라에서는 ‘보물’이라는 명칭의 차이를 두어,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일본의 것보다 낮게 평가하고자 했다.

31) 세키노 타다시는 1909년부터 1912년까지 4년에 걸쳐 실시한 한반도의 건축 및 고적조사에 대하여, 조사한 물건에 대해서는 매년 지방별로 시대를 기입한 일람표가 게재되어, 각각 유물의 가치를 고려하여 보존의 필요성에 따라 갑·을·병·정의 4등급으로 구별하였다. 그것이 토대가 되어 고적 및 유물 등록 대장에 기재되었던 것이 이후 이 보존령에 의해 보물로 승격되었다.

32) 오세탁, 「일제의 문화재정책-그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문화재』 29호, 1996, 20쪽.

해방이 될 때까지 본령에 의해 지정된 보물은 436점이다.

33) ‘조선총독부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시행규칙’ 조선총독부령 제36호로 발표되었다.

34) 보존규칙에 의해 등록된 유물은 385점이었는데, 보존령에 의해 지정된 것은 1933년 총 242건으로서 그중 보물이 208건이었다. 『조선총독부시연정보』, 疎和 8년, 523쪽. 그 후 1937년 당시에는 지정된 보물이 경성 남대문 이하 269호까지 있었으며, 고적은 경주 포석정터를 비롯해 70호까지, 고적 및 명승으로는 평양 모란대를 비롯해 42곳이 있었다. 조선총독부,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요목』, 1937.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은 전제조건이 모호하여 해석방법에 따라 다양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다. 제22호는 이 조문을 근거로 공용제한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소유자의 소유권 제약과 시설보존을 위한 의무를 지울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벌칙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제19조에서는 본령에서 규정하는 직권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당시 실제 도지사의 권한은 지역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보존에 관한 실질적 중요업무는 경찰서장이 관장하고, 경찰서장은 직접 조선총독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 시스템이었다.<sup>35)</sup> 막강한 권력기관인 경찰조직으로 하여금 문화재관리의 실무를 담당케 한 사실 자체가 식민지의 문화재수탈을 더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과 비교되는 당시의 일본의 법제도에는 「국보보존법」과 「중요미술품등보존에관한법률(重要美術品等の保存に關する法律)」이 있다.

국보보존법은 1929년 법률 제17호로서 공포되었다. 2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는데, 종래 특별보호 건축물과 국보로 구분돼 있던 것을 모두 국보로 통일하여 지정하였다.<sup>36)</sup>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유물은 국보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고사사보존법의 법체계와는 사뭇 달라졌으며 그 보호 대상 범위 역시 훨씬 넓어졌다.<sup>37)</sup> 그리고 국보의 유출 또는 이동은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졌다. 또한 경상적으로 인정되는 보조금은 20만엔 이하였지만 필요에 따라 증액이 인정되며, 보조금 지급의 대상으로는 건축물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35) 1933년 12월에 공포된 조선총독부훈령 제42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시행수속」 제10조와 제14조에는 보존령에 명시된 보존에 관한 중요업무를 경찰서장에게 위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36) 「국보보존법실시명령」은 칙령 제210호로 공포되어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사사보존회」 규칙은 폐지되고, 「국보보존회관제」가 제정되었다.

37) 국보보존법으로 국보의 보존범위가 넓어져 보물류 3,705건, 건축물 845건으로 국보 지정 건수는 증가되었다.

중요미술품 등 보존에 관한 법률은 1930년대 미술품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면서 제정된 법이다. 1930년대 경제 상태가 계속 불안정하고, 지정되지 않은 고미술품의 가치 하락으로 해외유출이 속출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33년 제정, 공포, 시행되었던 것이다.

중요미술품등보존에관한법률 제1조에서는 역사상 또는 미술상 특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중요미술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38)</sup> 또한 이전에는 주무대신이 등록 가치를 인정하고 지정하였던 것에 그쳤던 반면, 이 조항에서는 주무대신의 역할을 넓혀 중요미술품의 수출 및 이출에 대한 허가까지도 주무대신을 통하여 받도록 하였다.<sup>39)</sup> 제2조에서는 유출 또는 이출(移出)시 법적 효력은 유물의 위탁을 받은 점유자에게도 영향을 끼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은 과거의 고적과 유물만으로 한정되었던 법제도에서 보호해야 할 영역을 명승, 천연기념물까지 확대하고, ‘보물’ 지정이라는 법적 보호장치를 제도화 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라는 자문기관의 구성 내용을 보면 순수 조선인은 2명밖에 되지 않았기에, 민족 고유의 정신문화나 일본과의 역사적 관련성이 깊은 우리나라의 전승유적인 경우에는 지정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점에서 허울뿐인 자문기관이었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또한 1931년에 와서는 조선총독부의 외곽단체로 「조선고적연구회」가 만들어져 민간인 위주의 운영을 가장하였지만 이사장으로 총독부 정무총감이 취임하는 등 그 실체는 수탈을 위한 식민지 문화정책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때를 전후하여 총독부 박물관의 경주분관과 부립(府立) 개성박물관, 평양박물관이 순차적으로 개관되면서, 진열장을 채우기 위한 문화재 도굴 수탈과 암거래가 성행하였고, 나아가 황국사관에 바탕을 둔 조선역사의 날

38) 그러나 그 기준에 있어 모호하여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39) 그 당시의 이출은 대만, 조선 등 당시 일본령에 있던 외지로의 반출을 의미한다.

조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 대륙 침략전쟁이 장기화되자 일본은 천황중심주의 군국주의 이데올로기가 더욱 득세하고 그를 강화하고 확장하는 도구로서 문화유산이 이용됐으며, 더욱이 항일독립운동의 기운이 확산, 강화되자 민족 문화유산에 대한 억압과 파괴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환경 아래 전라북도 남원군의 유림단체의 항일 움직임을 계기로 삼아 “유림(儒林)의 숙정(肅正) 및 반시국적 고적의 철거”라는 일제 고등경찰의 만행이 현실로 나타나, 소중한 황산대첩비의 폭파와 해인사의 사명대사 석장비의 파괴를 비롯한 많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멸실되고 말았다.<sup>40)</sup> 여기에 그들이 내세운 문화유적의 보존이라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사라지고 말았으며 제2차 대전의 패망을 눈앞에 두고서는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라고 하는 제령(制令)은 제도적으로도 완전히 무시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일제강점기 중반의 이른바 문화정치 표방기에는 제도적 측면에서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회유책으로 제국주의의 실효를 거두려하였고 대륙침략이 시작된 후로는 제도적으로도 노골화된 탈법적인 권력의 강압에 의해 문화와 문화재를 말살한 것이다. 총독부의 청사를 가린다는 이유로 경복궁 광화문을 헐어 엉뚱한 위치로 옮기는 등 사적을 문화재로서 평가하기보다는 정책적인 잣대로 파악하여 보존정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다만 유적지 조사나 도보(圖譜)의 작성 또는 보물·고적의 지정과 보존조치 등에 관한 긍정적인 일면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민족문화재의 무법적인 약탈이나 민족문화재 파괴의 만행을 덮어줄 수 없다.

---

40) 이구열, 『한국문화재수난사』, 돌베개, 1996, 117쪽.

### Ⅲ. 1962년 문화재보호법의 제정경위와 내용상 특징

#### 1. 제정 경위

1945년 광복 후 정부의 문화재 보존관리정책은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과 근대와 현대의 과도기 속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혼란한 정세를 틈타 귀중한 문화재들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었다. 1948년 정부수립과 더불어 문교부에 문화국(文化局) 교도과(敎導課)가 만들어져 문화재 보존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해방을 맞이한지 얼마되지 않은 터라 어려운 시국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는 학자들도 있었으나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미루어지고 있었다. 단지 일제시대의 법령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만이 그 효력을 지속할 뿐이었다.<sup>41)</sup> 물론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되었던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를 되찾아오려는 시도와 노력이 보이기도 하였지만, 반환 문제 역시 제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sup>42)</sup> 반면 이 당시 일본에서는 문화재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이 성립되고 있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으로 더 많은 문화재들이 파괴되고 방치되어 그 문제가 심각해져 갔다. 이러한 문제들이 대두되자 1952년 대한민국정부 문교부장관에 의하여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 임시보존위원회」가 최초로 구성되었고 미약하나마 파괴된 문화재를 위하여 보수대책을 강구하기

41) 제헌헌법(制憲憲法) 제100조 규정에 의거.

42) 일본에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를 위해 우리정부는 1945년 미군정청장관을 통해 맥아더 장군에게 요청하고 1949년 7월 외무부를 통하여 일본제실(帝室)박물관에 소장된 우리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또한 1949년 12월에는 이승만대통령이 '고적애호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에 이르렀다.<sup>43)</sup> 그 이후 1955년 문교부 산하 문화국에 문화보존과가 구성되고,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가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이 보존회는 1957년 제11차 총회 때 문화재 보존에 대한 법규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며 ‘문화재’라는 번역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1960년 국무원령(國務院令) 제92호로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이 공포되었다. 1961년 설립된 ‘문화재관리국’은 1933년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바탕을 둔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을 사용하면서 문화재보호제도의 맥을 이어갔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상 전환점을 이루는 법령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규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그 제목에서 ‘문화재보존’이라는 용어를 채택,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이었던 각개의 개념을 ‘문화재’로서 통합하고, 그 보호 대상의 범위와 개념을 무형문화재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보물’을 ‘국보’로 개칭하였다.<sup>44)</sup> 둘째로는 앞서 논했던 위원회와 보존회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넘어서, 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조사연구기관이며 심의기관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는 점이다.<sup>45)</sup> 이러한 특징들로 보아 1962년 문화재보호법의 모태로서 확정적인 법규의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이 규정의 대부분이 1950년 일본이 제정한 문화재보호법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에, 일본 문화재 보호법과의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규정에서 지정된 현재 문화재는 국보 367, 고적 106, 고적 및 명승 3, 천연기념물 116,

43) 그 전에는 1945년 미군정청 관할의 ‘구황실사무청’이 발족되어 1955년 ‘구황실재산총국’이 개편·운명을 거치면서 고궁, 능, 원과 기타 국유재산을 관리하였다. 그러나, 보존과 보수대책에 대한 업무보다는 단지 기존 황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이었다.

44) ‘연극·음악·무용·미술·공예·민속 등 유형무형의 문화적 소상으로서 특히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문화재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의 정의는 그 후 문화재보호법이 제2조에서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를 포함시킴으로써 확정되기에 이른다.

45)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시기에 설치되었던 ‘고적조사위원회’는 보존에 관한 심사기관으로서 예외적으로 총독의 자문에 응했을 뿐이고,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에 의거한 ‘보존회’는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제1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설치된 위원회의 성격은 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조사연구기관이며 심의기관으로서의 성격과 문교부장관에 대한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며 이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문화재보존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

총 592점이다.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 문화유산 전반을 보호 관리하는 최초의 기본법으로 1962년 1월 10일 법률 제961호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되었다.<sup>46)</sup>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전 7장 73조와 부칙 3조로 구성되었다.

법률제정의 목적으로는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문화재 보호를 표방하고 있고, 단지 보존만이 아닌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문화재위원회를 설치하여 문교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sup>47)</sup> 또한, 지정문화재를 ‘국보’와 ‘보물’로 나누어 설정하였고, 문화재 지정 기준은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또는 관상(觀賞)상 가치가 큰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특히 유형문화재로서 중요한 것을 보물(寶物)로 하고, 보물 중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보(國寶)로 지정하였다.<sup>48)</sup>

그리고 이전까지 소유권의 귀속 또는 보상에 대한 규정으로 밖에 지나지 않았던 매장문화재에 관한 내용을 학술·예술 또는 고고학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귀속의 규정으로 확대 개선하였다. 무형문화재 및 민속자료 보호에 관한 규정 역시 이전 보호법의 대상에서 확대된 것으로, 지정문화재로서 국보, 보물과 동일한 관리 및 보호조치를 받게 하였으며 기념물에 관해서도 보호법의 대상에 포함시키게 하였다.<sup>49)</sup>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은 일제강점기의 규정들과의 유사정보다는 오히려 1950년 제정된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틀을 과거의 규정에 새로 얹은 결과라고 하겠다. 이러한 사정에는 당시 우리나라 정세와 관련이 있다. 해방 후 에

---

46) 이 사이 구황실재산관리사무총국(舊皇室財産管理事務總局)과 문교부와 통폐합하여 문교부의 외국(外局) 문화재관리국이 설치된다.

47) 1960년 11월 10일 국무원령 제92호인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에 의한 문화재보존위원회를 계승하였다.

48) 2006년 말 현재 지정된 우리나라의 국보는 승례문 이하 총 307호, 보물 홍인지문 이하 총 1445호까지이다. 2006 12월 문화재청 통계.

49) 보호법 제8조와 제10조에 각각 보존령에 없었던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 문화재보호법의 발전과정과 정비방향』, 문화재청, 2002. 82쪽.

는 대한민국 법령 외에 많은 구 법령이 포함되어 있었다.<sup>50)</sup> 이러한 구 법령은 1961년 7월 15일의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정리키로 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1962년 1월 20일을 기하여 모두 폐지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문화재보호법이 1962년 1월 10일자로 제정 공포된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제정이 열흘만 더 늦을 경우 구 법령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 위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동 폐지될 수밖에 없었다.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은 그만큼 시간에 쫓기고 있었고, 이러한 급박한 사정이 법제정의 졸속을 유발하여 12년이나 앞서 제정 시행되고 있었던 일본법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결과를 자초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동 법률안의 제안이유 중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동 법안은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문화재에 관한 법령으로서 현행되고 있는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대체될 법률안으로 제안되는 것”이라고 적고 있어 구 법령정리를 위한 것임을 명기하고 있다.<sup>51)</sup> 이상과 같은 제안 이유를 붙인 문화재보호법안은 별 다른 수정 없이 국회를 통과하여 1962년 1월 10일 법률 제961호로 공포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 2. 내용상 특징

### 1)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의 계승

문화재보호법은 보존령에 비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구체적인 조목을 삽입했기 때문에 법 적용의 폭을 넓혀놓았다. 즉, 내용은 같으나, 분량은 많아졌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고 하겠다. 문화재보호법에서 미처

50) 구 법령이라 함은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 시행된 당시에 효력이 인정되고 있었던 구 한국법령, 일정 때의 법령(제령·칙령·총령 등), 미군정 때의 법령과 과도정부의 법령으로서 제헌 헌법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헌법시행 이후에도 계속 효력을 가지게 된 법령을 말한다.

51)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 문화재보호법의 발전과정과 정비방향』, 문화재청, 2002, 82쪽.

명시하지 못한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의 내용에서도 보존령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보존령이 비록 세부사항까지는 규정하지는 않고 있어 면밀한 검토는 어렵지만, 주요 조항을 비교함으로써 문화재보호법이 보존령을 계승하고 있는 점을 살펴보겠다.

문화재 정의에 대한 부분을 보면, 보존령은 제1조에서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蹟), 회화, 조각, 공예품 기타의 물건’을, 문화재보호법은 제2조에서 ‘건조물, 전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기타의 유형’으로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서적과 고문서라는 표현의 차이 뿐 대상의 나열 역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대상의 평가기준은 보존령의 경우 ‘역사의 증징 또는 미술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미술의 모범’과 ‘예술상 가치가 큰 것’ 역시 표현의 차이일 뿐 다른 바가 없다. 기념물의 정의 역시 보존령은 ‘패총(貝塚), 고적, 사지(寺社), 요지(窯社) 기타의 유적, 경승(景勝)의 지(地) 또는 동물, 식물 지질광물 기타 학술연구의 자료가 될 수 있는 물(物)’로, 문화재보호법은 ‘패총, 고분, 성지, 궁지, 요지, 유물포함층 기타사적지와 경승지, 동물, 식물, 광물’로 거의 같다고 하겠다. 기념물의 기준 역시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의 가치가 큰 점을 설명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의 지정에 대한 사항에서는, 보존령에서 조선총독이 지정하던 것과는 달리 문교부장관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하는 점으로 개정되었을 뿐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의 지정에 대한 문구는 거의 같다고 하겠다.<sup>52)</sup> 보고대상의 지정에 대한 정의에서는 보존령에서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한정했다면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이나 그 보호물의 보호구역’까지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범위를 넓혔고, 보호구역과 보호물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정의 절차에서 자문을 해야 한다는 정의에 예외조항을 둔 점 역시

---

52) 문화재보호법 제9조.

모두 같은데, 긴급을 요하는 유물의 경우에 가지정(假指定)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정해제의 내용은 보존령의 '특수한 사유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단서에서 '가치 상실'이라는 구체적으로 명시 외에는 다름바가 없다.<sup>53)</sup> 지정해제의 통지의무 역시 같으나, 보존령에서 '지정된 물(物)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단서를 두어 법을 악용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관리단체의 지정에 대한 규정에서도 보존령의 제13에서의 지방공공단체를 지정한다는 점은 같다. 단, 문화재보호법은 제19조에서 그 범위를 '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또는 그 소유자나 관리자에 의한 지정문화재의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의 경비부담을 해당 단체에 부담시키고 있는 조항 역시 같다.

문화재의 수출과 반출을 허가사항으로 두고 있는 점 역시 동일하다. 보존령이 각 조문마다 허가사항을 따로 말한 반면에 문화재보호법은 제21조에 허가사항이라는 조항을 따로 마련하여 내용을 체계화했다. 그리고 반출의 허가에 관해서 허가권자가 자문을 거치거나, 의결을 거치게 하여 견제하고 있다는 점은 상통하고 있다. 문화재 매매의 경우 보존령은 제8조에 '소유자에 대하여 변경이 있을 때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이를 조선총독에게 계출(届出)해야 한다.'고 정의하여 총독의 승인 하에 소유자 변경이 가능한 점만을 규정했다면, 문화재보호법은 제23조 '국가 또는 박물관에서 매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매수자의 일차 권리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문화재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국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존령과 비교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매장문화재에 대한 인식은 보존령에 비해 문화재보호법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존령에서 조선총독부에 현상 변경 없이

---

53) 문화재보호법 제14조에서는 지정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또는 공익상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고하고, 허가 하에 발굴할 수 있는 규정의 내용은 문화재보호법과 같지만, 신고절차를 하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의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존령에 의해 보존 등의 가치를 인정받을 경우 ‘보물’로 등록된 물건들은 1961년 제정한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에 의해 ‘국보’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sup>54)</sup> 이는 ‘보물’로 지정된 유물이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의 변화는 없다고 하겠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은 ‘국보’와 ‘보물’로 지정함으로써 보존령의 규정을 세분화했는데, 그 지정의 문제점이 현재까지도 크게 대두되고 있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므로 4장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한다.

## 2) 일본의 1950년 제정 문화재보호법 수용

패전(敗戰) 후 일본은 재산세의 부과·농지개혁·재벌해체 등의 정세적 혼란에 의해 문화재의 개인소유자, 신사 및 사찰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필요경비를 충당할 여유가 없었으므로, 문화재 방치, 훼손이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재산세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거나 사사(社寺)의 유지를 위하여 문화재를 매각하는 일도 속출했다. 게다가 과세를 면하기 위해 국보 등의 허위 전재(戰災)신고가 행해졌고 소재불명으로 여기저기에 판매되면서 해외유출도 잦았다. 또 전재(戰災)에 의해 유민(流民)들의 국보건조물(國寶建造物)의 점거가 잇따르고, 이에 의한 손상, 황폐가 두드러지고 있었다. 한편 정부에서도 국가재정의 압박으로 국보의 보존, 수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위와 같은 혼란에도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게다가 메이지 유신 이후 줄곧 새로운 것과 서구의 문물을 좇아 전통을 경시하는 풍조가 이어져 문화재를 경시하는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일본의 국보 등 문화재를 잘 보존하자는 각성의 움직임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54) 1962년 12월 29일 『대한민국 관보』 제3333호에 고시되었다.

문화재보호를 위한 법개정의 움직임은 문부성내(文部省內) 관계 인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1949년 법룡사(法隆寺) 금당(金堂)의 화재로 벽화가 하룻밤에 모두 소실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에 그려진 아스카예술의 정수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 버렸다. 그 이후에도 마쓰야마성(松山城), 후쿠야마성(福山城)과 같은 국보급문화재들이 연이어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당시 학계와 국민모두가 충격에 휩싸여 이 위기에 대한 대책마련의 논의가 긴급히 이루어졌다.<sup>55)</sup> 이를 계기로 「문화재보호위원회」가 설립되었고, 1950년(昭和25)에 「문화재보호법」이 일본 국회에서 제정되기에 이르렀다.<sup>56)</sup>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보호의 제도적 문제를 입안(立案) 당초부터 다방면의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최대한 현실에 적합한 입법을 마련하도록 노력했다. 전문학자, 유물소유자, 문부성, 국립박물관 등의 관계당국자 등을 국회에 초대해 입법방침 또는 개혁안에 대한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각 위원을 전국에 파견하여 문화재 보존상황을 시찰하고 연구하였다. 동시에 문부위원회 산하 문화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각 방면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초안을 다듬어 발표함으로써, 각 방면의 구체적 비판을 구해 법안의 개선 정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당초 위원회에는 제1차안으로 국보보존법을 근본으로 한 전문개정법을 발의했지만, 제2차안에서는 무형문화재를 대상에 포함시켜 「문화재보존법」이라는 제명의 신입법(新立法)을 제시했고, 나아가 제3차안에 이르러 정부, 지방공공단체, 국민 모

55) 예전부터 문화재의 보존상태에 관심을 기울였던 참의원문부위원회는 법룡사금당의 비보를 접하자마자 사태의 중대성을 거울삼아 바로 현지에 조사반을 급파했다. 그리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함과 동시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해의 흔적을 생생히 듣고자 금당 반대편의 승방(僧房)에서 관계관들의 사정을 청취하고 문화재보존에 관해서 결함 및 개선책에 대해서도 토의를 계속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참의원문부위원회는 회파 구별없이 위원 모두가 문화재보존의 기본원인을 개선하지 않으면 문화국가의 건설에 중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 조금씩 획기적인 입법을 행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달해 그 준비를 착수했다.

56) 법룡사 화재발생 후부터 1년이 지나 1950년 4월 제10차안이 나오기까지 많은 의견이 속출하였지만 결국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매장문화재에 관한 규정을 첨가해 동년 4월 25일엔 참의원 문화위원회에 제안되었고 5월 1일에는 중의원을 통과하여 문화재보호법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두의 노력에 의해 ‘문화재를 지켜나간’다고 하는 의지를 담은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의 내용을 담아 「문화재보호법」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문화재’라는 용어가 일본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고 문화재의 범위나 영역도 처음으로 확실하게 규정지어졌다.<sup>57)</sup> 이처럼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이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 제정 작업에 그대로 참고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점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한국	일본	비고
제정	1962.1.10 법률 961호	1950년 5월 30일 법률214호	
구성	7장 73조	7장 122조	
목적	문화재 보존 및 활용 국민의 문화적 향상 도모 인류문화 발전기여	문화재 보호 및 활용 국민의 문화적 향상에 이바지 세계문화에 공헌	
구분 및 정의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 및 정의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자료, 기념물로 구분 및 정의	
위원회의 명칭	문화재위원회	문화재보호위원회	
위원회의 설치	문교부장관 산하	문부성의 외국(外局) 독립적으로 직권 행사	
위원회의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	문화재의 보존 또는 활용, 문	

57)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는 1962년까지 한차례의 중요한 개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문화재 및 민속자료의 관리단체체도를 만든 것이고, 둘째로는 중요 무형문화재의 지정체도를 만든 점이다. 셋째는 종래 무형문화재의 일부에 속해있던 민속자료를 하나의 독립 문화재로 나누어 보호체도를 정비한 점이 있다. 넷째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첨가하여 법 정비를 하였으며, 다섯째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경우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등과 같이 기념물이라는 용어로 칭해졌고, 마지막으로는 지방문화재규정이 신설되었다.

역할	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화재에 관한 조사연구 등	
위원회의 부속기관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둠	문화재전문심의회, 국립박물관 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의 공개여부	공개	공개	

[표 1] 한국·일본의 <문화재보호법> 내용 비교

법제정의 목적에 있어 일본은 ‘문화재를 보호하고 또한 그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세계문화에 공헌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계문화’를 ‘인류문화’로 표현을 달리했을 뿐 그 목적 역시 일본의 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국가와 민족마다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목적의 동일함을 지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 과거의 법제도와 비교해 괄목할 점은 그 대상이 ‘전통유물에 편중되지 않으며, 보존과 그 활용이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나아가 세계문화의 진일보에 공헌 한다’는 매우 거시적이고 보편적인 목적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우리의 문화재보호법에서의 문화재의 정의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4가지로 정의하고 있다.<sup>58)</sup> 그 4가지 분류 역시 일본의 법과 다를 바가 없으나, 일본의 법에서는 제2조에서 ‘기념물’에 대한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폐총, 고분, 도성적(都城跡), 성적(城跡), 구택(舊

58) 유형문화재(건조물, 전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기타의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무형문화재(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 기념물(폐총, 고분, 성지, 궁지, 요지, 유물포함층 기타사적지와 경승지, 동물, 식물, 광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또는 관상상 가치가 큰 것), 민속자료(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기타의 물건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宅) 기타의 유적으로서 우리나라에 있어 역사상 또는 학술상 가치가 높은 것 그리고 정원, 교량, 협곡, 해변(海浜), 산악, 기타의 명승지로서 우리나라에 있어 예술상 또는 관상상(觀賞上) 가치가 높은 것, 또한 동물(생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로써 우리나라에 있어서 학술상 가치가 높은 것'이라고 적고 있다. 따라서 사적지, 경승지, 동물, 식물, 광물의 정의와는 달리 일본문화에 맞는 정원, 교량, 협곡, 해변, 산악 등 그 대상의 구체화로 기념물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항 역시 일본은 '문화재보호위원회'라고 칭하며 제6조에서 문화재의 보존 또는 활용, 그리고 문화재에 관한 조사연구 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를 행하는 것을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재위원회는 제3조에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고 설치 이유를 적고 있다. 즉 우리나라 문화재위원회는 당시 문교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되었다.<sup>59)</sup> 그리고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두어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및 제3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sup>60)</sup> 일본은 '문부성의 외국(外局)으로서 문화재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독립해서 그 직권을 행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성격에 있어 문부성의 외국(外局)으로서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던 일본의 문화재보호위원회는 문교부장관의 자문기관의 역할에 그치지 않았던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과 비교가 된다. 일본은 위원회의 부속기관으로 문화재전문심의회(文化財專門審議會), 국립박물관 또는 국립문화재 연구소를 두고 있었다.

지정문화재의 공개 역시 '문화재가 중요한 국민적 재산이라는 것을 자각하

59) 1960년 11월 10일 국무원령 제92호인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에 의한 문화재보존위원회를 계승하였다.

60)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서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그 전공분야에 따라 제1분과 위원회는 제2조 제1호의 유형문화재에 관한 전조의 사항을 분장하고, 제2분과 위원회는 제2조 제2호 및 제4호의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에 관한 전조의 사항을 분장하며, 제3분과 위원회는 제2조 제3호의 기념물에 관한 전조의 사항을 분장하였다.

고 그것을 공공을 위해 중요하게 보존하며, 그것을 함께 향유하기 위해 공개하는 문화적 활용에 힘써야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도 상호 다를 바가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과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의 내용을 계승, 수용한 점을 중심으로 우리의 문화재보호법의 내용을 고찰해 보았다. 문화재라는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대상유물과 관리범위 등에서 뚜렷하게 구별할 만한 차이를 발견한 수 없었던 점은 법제정 당시의 역사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아쉽고 지적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다고 생각된다. 특히 '문화재'의 정의에서 재산의 개념으로 비취지는 용어의 설정이나, 국보와 보물로 지정문화재를 재지정하면서 발생한 문제들, 그 밖의 보호법의 테두리에서 제대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한 많은 문화재들의 사례들이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의 긴급성이 낳은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 IV. 1962년 제정 문화재보호법의 문제점

### 1. 「문화재」 용어의 사용

문화재보호법이라는 제목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문화재(文化財, Cultural Properties)’라는 용어는 1950년대 들어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공식적으로는 1961년 문화재관리국 직제가 공포되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sup>61)</sup> 이 용어는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의 영향에 의해 도입되었고, 일본의 공식적인 사용이 1950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에서 비롯된 점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그 전 문화재라는 말은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 천연자원의 개발이 활기를 띠게 됨에 따라 자연의 파괴와 역사적 문화유산의 손상·파괴 및 소멸을 우려한데서 일어난 민간의 자연보호, 문화재보호운동의 과정에서 성립되었다.<sup>62)</sup> 따라서 문화재란 근대적 개념이고 인류문화의 보존·보호를 위한 정책적 개념이며, 근대자본주의적 재화의식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와 매우 긴밀하게 비교 평가되고 있는 한자문화권의 동북아 삼국(한국, 중국, 일본)을 비교해 보면 중국은 ‘문화재’를 정신적 문화유산의 의미와 재화의 의미가 합성된 ‘문물(文物)’이라고 표기하며 국가 기관도 ‘문화유산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1949년부터 ‘문물(文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문물보호법」에 관한 법령, 지시와 방법이 발표되었다. 반면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그대로 모방하여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문화재

61) 현행 한국 문화재보호법령에 “文化財라 함은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의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면서, 가치가 큰 것으로 1)유형문화재, 2)무형문화재, 3)기념물, 4)민속자료 등의 네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지칭한다. 문화재청, 『문화재 관계 법령집』, 2001년, 18-19쪽.

62) 김봉건. 「영국의 문화재보존정책」, 『문화재』 22, 문화재관리국, 1989. 12, 313쪽.

(cultural propertie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문화는 인간이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물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통이 계승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길을 열어나가는 것이다. 문화를 경제논리에 의한 재산개념으로 해석하고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아주 오랜 기간을 통해 현재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전통적인 산물들”이 단순한 재화의 가치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보존·전승되어야 할 유산이라는 개념으로의 전환이 될 수 있는 용어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불상’을 ‘부처상’으로, 입상(立像)을 ‘선상’이나 ‘선모습’으로 하는 등 한글로 바꾸자는 문화재 관련 명칭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 2. 지정문화재 목록의 형성

1909년 9월 한국정부탁지부건축소(韓國政府度支部建築所)로부터 세키노 타다시(關野貞), 타니이 세이니치(谷正濟一), 쿠리야마 슌이치(栗山俊一) 3명이 고(古)건축조사라는 촉탁을 받고 식민지 조선으로 오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sup>63)</sup> 1909년에서부터 1912년까지의 4차례에 걸친 방문은 세키노 등이 한반도 내의 역사·문화적 상태나 변천을 특징지을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조사 차원으로써 건축조형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점차 유물에 대한 조사로 진행되어 매년 지역별로 시대를 기입한 일람표를 작성하였다. 이 일람표에는 세키노가 유물의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을 직접 평가하여 갑·을·병·정이라는 등급으로 구별해 기입하였

63) 1909년 9월 19일부터 12월27일까지의 조사는 ‘건축물을 주로 그 대상으로 하여, 유명한 고적 및 예술적 유물’을 살피기 위한 것이었고, 1910년 9월 22일부터 12월7일까지의 조사는 한일병합 뒤에 따라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에 의한 ‘고대문화의 상태 및 변천을 특징짓는 충분한 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였다. 그리고 1911년 다시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 촉탁의 명분으로 9월 13일부터 11월 5일까지, 1912년 9월 1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4차례 방문, 고적조사를 하였다.

다.<sup>64)</sup> 1910년 조사 이후 조선 문화 변천의 역사는 ‘삼한시대’를 추가한 5기로 구분되어진다. 1909년부터 1912년까지 4년간 단위연도별로 일람표를 만들어 게재한 총 조사 물건은 약 1,450건이었다. 그 중 579건이 갑·을이고,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상북도가 160건으로 전국의 27.6%를 차지하고 있다.<sup>65)</sup> 평가대상을 보면 목조건축조형물이 139건(24.0%)이며, 석조물이 4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sup>66)</sup>

1916년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에 근거를 둔 유물등록이 시작될 당시 세키노의 조사에 의하여 갑과 을로 평가를 내린 유물이 78건(40.6%)에 달했다. 이후 약 8년간에 걸친 유물등록의 40%가 세키노의 평가에 근거한 것으로써 그의 가치평가는 그 후에도 유물보존을 위한 등록에 지침이 되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 ‘사찰령’을 통해 이미 등록이 되었던 목조건축물은 제외되었다.<sup>67)</sup>

이렇게 이어져 오던 고적 조사는 고적조사과의 폐지와 무단통치시기의 긴 축재정정책으로 박물관 사업은 해마다 쇠퇴해져 갔다.<sup>68)</sup> 적극적인 발굴조사

64) 즉, 갑이란 ‘가장 우수한 것’, 을은 ‘그 다음 가는 것’이라 하고 이 두 가지를 ‘특별보호가 필요한 것’이라 하였다. 병은 ‘그 다음 가는 것’, 정은 ‘가장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이 두 가지는 ‘특별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단, ‘병의 물건은 후일 조선의 모든 조사를 끝낸 후에 다시 비교하여 을에 편입시켜야만 하는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덧붙이고 있다. 그리고 특별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갑과 을의 평가 물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4시대별로 일람표를 게재하였다. 종류는 궁전·성곽·관요·묘사·서원·능묘·탑파로, 그 밖에 고분·불상·동종·찰간·석탑·비석·향로·서화 등이 있다. 1910년 조사물건의 가치평가도 갑에서 정까지의 4등급으로 나뉘었는데, 병은 ‘지금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크게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 정은 ‘보존의 가치가 가장 적은 것’이라 하여, 전년에 비해 보존의 가능성의 여지를 많이 남기는 등급분류를 하고 있다. 또 1911년 조사에서는 병을 ‘을 다음가는 것’, 정은 ‘보존의 가치가 가장 적은 것’으로 하고 있으며 ‘보존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발언은 자취를 감추었다.

65) 지역별 2위는 경기도의 96건(16.6%), 3위가 강원도의 84건(14.5%), 4위가 경상남도의 62건(10.7%)로 이어진다. 廣瀨繁明, 「初期の朝鮮建築・古蹟調査とその後の文化財保護」, 『考古學史研究』第10号, 2003. 10, 60쪽 참조.

66) 종류별류로는 석조물이 235건(40.6%), 조각이 82건(14.2%), 공예품이 9건(1.6%), 고적류가 81건(13.9%), 기타가 33건(5.7%)를 차지하고 있다. 廣瀨繁明의 위의 책, 60쪽 참조.

67) 1916년 세키노의 평가에 의한 등록된 「고적 및 유물등록대장」에는 사찰령에 의해 그 이전 등록되었던 건조물은 빠져있다.

68) 식민지 조선의 고적 조사는 박물관에 전문 기술원을 두어 발굴, 측량, 촬영을 담당시키고 일본의 학자를 위촉해 특별 조사를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작은 박물관의 예산으로 고적 조사와 발굴, 고건축물, 석물 등의 수리 보존, 그리고 도록(圖錄)·보고서·박물관보 등의 인쇄까지 부담하고 있어 진열장의 구입, 보수등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藤田亮策, 「朝鮮古文化財の保存」 『朝鮮學報』, 第1號,

는 물론 도굴이나 파손 후의 처리조치 생각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부의 보조금으로 겨우 학술조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1931년 쿠로이타(黑板) 박사의 노력에 의해서 1933년 이후에는 일본 학술 진흥회로부터 고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sup>69)</sup> 그리하여 총독부의 보존사업만을 보조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조선고적연구회」이다. 이 연구회는 구로이타의 주장에 의해 1931년 8월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이루어진 유물의 조사·연구 또한 일본학자 주도의 의하여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음이 당연하다.

1933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시행 이후 보호대상의 고적 및 유물등을 ‘보물’로 지정하기 시작하였으며, 보물 200건, 고적 21건, 천연기념물 3건이 처음 지정되었다. 1942년 혹은 1943년까지 7회에 걸쳐 지정이 추가되거나 해제되었으며, 조선총독부에 의한 최종적인 지정건수는 보물 419건, 고적 145건, 고적 및 명승 4건, 명승 및 천연기념물 2건, 천연기념물 146건으로 총 716건에 달했다.<sup>70)</sup> 이 지정물건의 대상 역시 이미 세키노의 조사 목록에 의해 지정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인 지정 물건은 1940년 7월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일람』으로 출판되었고, 제9차 지정까지가 수록되어 있다. 이 시기 지정된 문화재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물로써 재지정 되어 고시되기에 이르렀다.

1930년대 이후 경제공황과 만주사변, 국제연맹 탈퇴 등에 따른 일제의 체제 위기 상황에서 총독 우가키 카츠시케(宇垣一成)는 내선융화의 정신적 지배를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조선의 문화, 유형·무형의 문화재가 애국심 고양에 적극 활용되어 갔다. 실제로 일본인 스스로도 조선에서의 고적조사와 보존을 문화적 기여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으며. 특히 박물관을 고적 조사와 보존을 위한 관람시설이고 학술적 작업을 하는 곳이며 동시에 표본, 모형, 실

1951. 256쪽.

69) 藤田亮策, 「朝鮮古文化財の保存」 『朝鮮學報』, 第1號, 1951. 5, 256쪽 참고.

70) 廣瀬繁明, 「初期の朝鮮建築・古蹟調査とその後の文化財保護」, 『考古學史研究』 第10号, 2003, 10, 71쪽.

물, 도표 등을 통해 국민을 교육하는 ‘사회교육시설’로 보았다. 따라서 조선 총독부는 고적, 유물, 박물관 등을 사회교화를 위해 대중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sup>71)</sup>

세키노와 함께 문화재를 조사했던 구로이타 가츠미(黑板勝美)의 고적 조사에 대한 열정의 유래와 그 사업의 목적을 ‘중국 문명을 가장 먼저 수용한 곳은 평양이었고 또 이 지역에 중국 문명이 미친 영향이 한민족의 이동과 동요를 가져왔으며 나아가 일본 민족의 기원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기술한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sup>72)</sup> 특히 조선 역사의 기원에 있어, 단군신화에 대하여 ‘최근 유행하는 신앙일 뿐’이라고 일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기원과 정신을 말살하려는 의도를 내비추었다. 이는 1921년의 강연 「조선의 역사적 시찰」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sup>73)</sup> 일본의 학자들에 의한 유물조사와 그들의 관점으로 평가되어진 목록이 해방된 이후 1962년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목록으로 그대로 전승되어 온 점은 그 조사목적과 등록과정 등을 미루어 보더라도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다.

### 3. 국보와 보물의 상징성

2006년 국보1호의 변경을 둘러싼 여론의 비판이 잇따르자 문화재청은 승례문(남대문)을 서울에 현존하는 목조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로서 서울의 관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건축적인 특징 및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국보 1호로 정해졌다고 공식 입장을 밝혀왔

71) 김인덕, 「일제하의 자주적인 우리문화 지키기」, 문화예술진흥원, 2003. 8, 18쪽.

72) 구로이타는 고적조사위원으로서 1916년에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을 조사(『大正午년도(渡道(度)古蹟調査報告書』,朝鮮總督府, 1915.)한 결과를 일반인 대상으로 기술한 「대동강부근의사적(大同江附近の史蹟)」(1916년)에서 “조선 역사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자신의 조사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했다. 李成市, 「コロニアズムと近代歴史學」, 『植民地主義と歴史學』, (東京 ; 刀水書房), 2004. 79쪽.

73) 黑板勝美, 「朝鮮の歴史的視察」, 『朝鮮彙報』, 1916. 11.

다.74)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일본의 입장과 다를 바가 없다. 이미 승례문은 식민지시대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 고적(古蹟) 제1호로 지정되었으며, 이 지정 번호는 1960년대 초반 대한민국 정부가 문화재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국보로 고스란히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식민지시대 고적의 지정 명칭, 순서 또한 지금의 문화재지정 번호와 별 차이가 없다.

승례문이 일본에 의해 조선고적 1호로 지정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상징성에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은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을 철저히 파괴했다. 그 중 1916-1919년 제2대 조선총독으로서로 강압통치를 시행한 것으로 악명 높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는 1904년 9월부터 1908년 11월까지 조선군사령관으로 있으면서 한성의 정문인 승례문의 파괴를 주장했다. 승례문과 흥인지문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두 선봉장인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각기 이들 문을 통해 도성에 입성해 서울을 함락시킨 자랑스러운 전승기념물이라는 이유로 보존될 수 있었다.<sup>75)</sup> 반면 서대문(돈화문) 등 다른 성곽은 왜군의 승전과 무관했던 관계로 못해 완전 철거되는 비운을 맞았다. 이러한 예는 평양성 현무문(玄武門)과 칠성문(七星門), 보통문(普通門), 모란대(牡丹臺), 을밀대(乙密臺), 만수대(萬壽臺)등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모두 청일전쟁 때 일본군의 승리와 연관되는 전승기념물이라는 이유로 고적(古跡)으로 지정돼 보호받았기 때문이다.<sup>76)</sup> 승례문이 1916년 세키노의 『고적 및 유물보존 등록대장』에 등재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33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의한 보물로 지정된 사실은 일본의 침략적인 역사인식과 연관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하겠다.

74) 문화재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승례문을 국보 1호로 지정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75) 太田秀春, 「근대 한일양국의 성곽인식과 일본의 조선 식민지정책」, 『한국사론』 49집, 서울대 국사학과, 2003, 216-217쪽.

76) 太田秀春의 위의 글, 223-224쪽

일제는 1943년 숭례문을 폼하해서 남대문, 흥인지문을 폼하해서 동대문 등으로 불리게 하고 조선 문화재 제1호로 등록했고, 해방 후 우리나라는 아무런 역사적 사실이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조사 연구 없이 일제잔재를 그대로 계승하여 숭례문을 국보 1호, 흥인지문을 보물 1호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은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조선의 정신적 형태의 상징물을 철저히 파괴, 훼손한 후 물리적 승리와 정체성을 정복하려 하였다. 일본의 물리적 파괴와 민족 정서의 침탈을 기본으로 우리의 문화재에 큰 피해를 초래했다. 서울 도성은 1900년 7월 숭례문 북쪽 성벽의 철거가 시작되었고, 대한제국을 좌지우지한 일본 제국주의가 추진한 경성 일대 도시계획에 의해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교통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철거 혹은 이전이 추진된 것이다.

그밖에도 임진왜란 기간 동안의 축성된 많은 왜성 유적을 ‘고적’으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 중에는 석탑·부도(浮屠)·석등·석조불상·석비(石碑) 등의 석조물이나 그 외 동불·동종(銅鐘)·금제장신구·동기류 등의 금속제품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화나 목조건축은 그 수가 적은 이유 역시 일제잔재의 계승 때문이라고 하겠다.

또한, 국보와 보물에 의한 문화재의 번호부여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숫자화한다는 문제점을 도출시켰다. 번호가 이룰수록 위대한 것이고 번호가 낮을수록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문화재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낮게 하는 문제점이 아직도 남아있다. 국보 1호인 숭례문을 변경하자는 일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문제는 일제청산이라는 문제 외에도 숫자에 의한 유물의 위상결정이라는 문제점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보1호를 훈민정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대다수 동의를 확인하고 국보 제1호로 삼을 것인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련번호로 되어 있는 문화재들에 부여된 번호를 어떻게 큰 어려움 없이 풀어낼 것인가 기술적 문제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 4. 법적 보호 밖의 문화재

문화유산의 범주에는 인류의 과오를 보여주는 장소와 건물 등 민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장소 등도 속할 수 있는데, 이를 부(負) 문화유산, 즉 “네거티브 문화유산” 이라고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청태종(皇太極)에게 항복했던 삼전도비(三田渡碑), 수탈의 상징으로 이미 철거된 조선총독부 등이 있고, 외국의 예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바르샤바 역사 지구, 히로시마 원폭 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류 역사상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 많다고 하겠다. 그러나, 치욕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민족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상징성 때문에 보호하거나 관리하기 보다는 파괴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문화재에는 문화재보호법의 법적 보호를 역시 받지 못하고 있다. 경복궁에 광화문의 위치를 변경하고 근대 건축으로 장엄하게 지어졌던 ‘조선총독부’ 건물은 건물의 이전 및 보존이라는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주요 정책의 하나로 철거되고 말았다.

친일화가 교회동 가옥, 친일과 권력주변의 해바라기였던 미당 서정주의 양옥집, 친일파 지식인 이광수의 고택 등을 보존하는 것은 치욕의 역사는 감추고, 좋은 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를 바라보고자 하는 성숙된 역사의식의 발로이기도 하다. 이러한 건축물 혹은 유물 들은 ‘기념’의 개념이 아닌, ‘기록’의 의미로 남겨야 할 것이다. 즉 ‘기념관’ 과 ‘기록관’을 분명히 구분하고 당사자들의 모든 것을 기록하여 역사교육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야 말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보다 공적으로 이익

이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문화재보호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1) 「문화재」 용어의 사용 2) 지정문화재 목록 형성 3) 국보와 보물의 상징성 4) 법적 보호 밖의 문화재로 나누어 논해 보았다. 문화재보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호법제의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문화재보호에 대한 국민전체의 사명감 제고와 이에 따르는 보호운동이 활발해야 한다. 이러한 국민의 문화재보호운동은 영국에서 그 전형을 찾아볼 수 있다. 영국에서 최초의 조직적인 국민단체에 의해 문화재보호운동이 일어난 것은 William Morris에 의해 1877년에 창설된 「고건축보호협회」(THE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cient Buildings)였지만, 적극적인 주민운동의 기반이 다져진 것은 1984년 창립된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 for Places Historic Interest or Natural Beauty)에서부터라고 하겠다.<sup>77)</sup> 현재 수백만 명의 회원들이 자발적인 문화재보호운동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적절한 시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특권을 법으로 보장해 주었고 그 결과 이 운동은 더욱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sup>78)</sup>

우리의 문화재보호법 역시 일제 식민지사관을 청산해야 한다는 근본 문제의 제기가 아니더라도, 의식있는 국민들의 연구와 노력에 의해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된 문화재 행정을 이루어, 문화재보존과 연구성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문화재보호운동’과 국가의 재정투자 등의 노력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77) 1895년 영국에서 변호사 로버트 헌터(Robert Hunter), 여류 사회활동가 옥타비아 힐(Octavia Hill), 목사 캐논 하드윅 론즐리(Canon Hardwicke Rawnsley) 세 사람에게 의해 NT협회가 설립되었다.

78) H.W.R. Wade, *Administrative Law*, 4th ed, Oxford : Clarendon Press, 1977, pp.158-159 ; 磯田尚子, 「ナショナルトラストの思想史的基盤」, 『歴史的歸山の保護』, 信山社, 1997, 4쪽 ; 78)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 문화재보호법의 발전과정과 정비방향』, 문화재청, 2002, 134쪽. 참고

## V. 결론

유럽의 선진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재에 대한 가치와 보호를 인식한 일본은 1897년에 「고사사보존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911년 식민지인 조선에 「사찰령」을 제정하였다. 이 시기는 무단통치라는 독자적인 식민통치를 조선에 적용하였다는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사찰령의 뿌리가 고사사보존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점을 보면 일본이 내지연장주의 정책을 식민지조선에서도 적용시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고사사보존법이 고사찰과 신사를 보존하는데 역할을 두고 있는 반면 사찰령은 사찰의 권한을 총독부로 이전시키는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어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시작된 문화재를 위한 보호제도는 일본에서 다시 1911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협회」가 발족되어 보존의 대상을 명승과 사적에까지 넓힌 노력으로 가속화되었고, 일본학자들은 조선으로 건너와 조선의 사찰과 유적을 조사를 연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식민지 조선에서 1916년 「고적및유물보존규칙」이 제정된다. 조선총독부는 이 법령을 통하여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대장에 직접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평가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유물은 1933년 제정된 「조선보물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의해 '보물'로써 지정되게 되었다. 기존의 법률보다 체계적인 보존령은 이미 일본에서 1919년에 제정된 「사적명승천연기념물」과 1929년의 「국보보존법」을 종합한 법률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은 1933년 「중요미술품등의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는 역사적인 사실만이 아닌 예술적인 미술품 등에도 그 가치를 인정하는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주관한 문화재보호 관련 법령들은 식민지조선과 일본 자국에서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존한다는 명목과 보존 대상은 같았지만 그

내용과 목적은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본 관점의 문화재보호 관련 법령과 내용은 일본이 떠난 후에도 계속되었다.

해방 직후 우리의 문화재는 불안정한 정세와 한국전쟁으로 인해 파괴되면서 그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1955년 문교부 내(內) 문화보존과가 구성되고, 1960년의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에 이어서, 1962년에는 드디어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시급하게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그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던 보존령을 계승하였고, 1950년에 일본에서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대부분을 수용하여 법적 면모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문화재보호법은 크게 개정된 내용 없이 현대에 이르고 있고, 그 문제점도 많다고 하겠다.

보존령에 비하여 세분화되고, 매장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령 계승 중 가장 구체적인 문제점은 지정 문화재이다.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평가되고 그 보존의 가치를 인정받아 매겨진 등급을 바탕으로 지정된 ‘보물’이 별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국보’로 명칭만 바뀐 채 가치평가의 재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또한 일본의 1950년 문화재보호법의 수용 문제는 명칭에서의 동일함 외에도 제정, 구성, 목적, 구분,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공개 등의 전반적인 내용과 상세부분까지 거의 동일한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특성과 민족 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법안의 수용은 문제가 있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이 지닌 문제점과 개정을 필요로 하는 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일본 문화재법에서 모방하여 민족의 문화유산을 ‘문화재’라는 명칭으로 정의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문화재라는 용어는 문화를 경제논리에 의한 재산개념으로 해석한 것으로, 소중하게 보존·전승되어야 할 유산이라는 개념으로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고적이거나 유물 대장에 등록될 당시 일본인에 의해 붙여진 많은 문화유산들

의 이름이 아직도 그대로인 점도 문제이다. 지정문화재에 있는 많은 문화유산들의 명칭도 한글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지정문화재 목록형성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세키노 타다시(關野貞) 등 일본인들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평가를 이제는 우리가 재검토해야 한다. 그들은 조선의 역사왜곡과 식민지정책의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문화재를 답사했기 때문에, 그 목록이 우리의 중요문화재를 대표한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새로운 유물의 출현이나 기존 지정문화재의 훼손 등으로 인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대변화에 따른 유물의 가치 상승이나 하락에 따른 지정의 신축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국보, 보물의 상징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국보 1호 ‘송례문’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숫자 ‘1’이 주는 상징성을 부인할 수 없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보 1호에 대한 상징성은, 초등학교 시험에도 나오는 현실에 비해 숫자에는 의미가 없다는 문화재청의 공식입장은 논란을 잠식시키기에 부족하다. 지정 배경만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지정유물의 제도를 숫자에 의해 그 가치를 줄 세워놓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재평가와 재분류 체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문화유산은 시대와 흐름을 같이 하는 특수성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유산들은 다시 태어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법적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예술과 미술적인 가치에 의한 기념물이 아닌 기록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의 성숙함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우리의 「문화재보호법」의 법적 장치가 갖는 역사적,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고 그 개정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발전된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의 사례를 통해 문화재보호 법률이 나아갈 좋은 예들을 도입할 수 있겠다. 우선 중국의 1982년 「중국인민공화국문화물보호법(中國人民共和

國文物保護法)」은 ‘유물의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수한 역사문화유산을 계승시키고, 애국과 교육을 진행시켜 이로 인하여 사회주의의 정신을 건설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어, 자국의 이익과 문화의 이용이라는 부분이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다. 또한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세계의 각국에서는 건축물을 보존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연환경과 주변의 경관까지도 보존하는 정책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기존의 전통도시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과 근대건축물 또한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정도로 훼손되어 버리는 점도 아쉽다. 따라서 문화재의 개념과 보존대상을 거시적으로 넓힐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로, 문화전반에 걸친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가 필요하다. 필자가 일본을 찾았을 때 일본이 국가 4주년 계획으로 고구려의 벽화 모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문화재의 재평가와 재분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뒷받침해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 일본만 보더라도 여러 프로젝트는 국가 주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국가에서 학자와 연구단체, 연구자들을 위한 심도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국가정책에 의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들이 성과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셋째, 일제강점기 및 전쟁 중에 빼앗긴 우리의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의 심도 있는 연구와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인소유의 문화재나 공공박물관에 소개된 유물 등은 사실상 반환의 요구가 어렵기에 국가는 민간단체,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조하여 단계적인 대여 방식, 매입 등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넷째, 문화유산의 보존과 보호를 위해 박물관의 공공문화공간으로써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문화재의 관리는 많은 인력과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는 지자체와 박물관의 문화적 역할을 강화해 현대사회에서 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욕구를 잘 활용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일을 대비한 북한과의 문화적 협력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싶다. 북한은 아직 과거의 대일본관계를 청산하지 않았으므로 북한에서 반출된 문화재만이라도 남한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의 경험을 그들에게 전하고, 적어도 문화재의 반환과 보호만큼은 남한과 북한이 이념의 차이를 극복하고 신속히 긴밀하게 협조하여 대내외적으로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문화재의 보호와 반환에 관한 한 남북한이 냉전의 정치적 이념과 논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문화유산이야말로 우리의 정신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문화유산 또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통일 후의 문화재 관리라는 현실적 과제를 안고 조사연구와 보호지원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은 역사의 증거이며 민족의 정신이다. 문화재에 담긴 상징성과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과거가 우리 미래의 지표라고 한다면 우리의 역사와 정신의 주체를 위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유산은 어떠한 형태로 전해져 왔는지 성립배경을 통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평가와 모색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참고 문헌

### [자료집]

#### 국문 자료

『대한민국 관보』 제3333호, 1962. 12. 29.

『문화재 관계 법령집』, 문화재청, 2001.

조선총독부, 『일제하법령집람』, 국학자료원, 1996.

조선총독부, 『조선법령집람』, 제국지방행정학회 조선지부, 1938.

『조선총독부 관보』 제2290호, 1934. 8. 27.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 문화재보호법의 발전과 정비방향』, 문화재청, 2002.

『한말근대법령자료집』 제9권, 1972.

#### 일문 자료

東京國立博物館, 『東京國立博物館百年史』, 東京:東京國立博物館, , 1973.

文化財保護委員會, 『文化財保護の歩み』, 文化財保護委員會, 1961(昭和37).

中村榮孝, 「朝鮮史の編修と朝鮮史料の蒐集」, 『古文化の保存と研究』 黑板博士記念, 吉川弘文館, 1953.

朝鮮總督府古蹟調査委員會, 『朝鮮古蹟調査報告』, 國書刊行會, 1974.

\_\_\_\_\_, 『朝鮮考古資料集成』, 出版科學綜合研究所, 1983. 5.

### [단행본]

#### 국문 자료

- 강상중,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997.
- 남친우, 『유물의 재발견』, 정음사, 1987.
- 박노자, 『우승과 열패의 신화』, 한겨레신문사.
- 배형일, 『일본의 발명과 근대』, 이산, 2006.
- 이만열, 「日帝 官學者들의 植民史觀」, 『韓國의 歷史認識』 上,下, 창작과 비평사, 1976.
- 이구열, 『한국문화재 수난사』, 돌베개, 1996.
- 장호순, 『문화재학개론』, 백산자료원, 2002.
- 정문교, 『문화재 행정과 정책』, 지식산업사, 2000.
- 최석영, 『일제의 동화이데올로기 창출』, 서경문화사, 1997.

#### 일문자료

- 藤田亮策, 『朝鮮古蹟調査』, 高桐書院, 昭化23.
- 西川長夫, 『國民國家形成と文化變容』, 新曜社, 1995.
- 寺内威太郎 外, 『植民地主義と歴史學』, 刀水書房, 2004.
- 坂詰秀一, 『太平洋戰爭と考古學』, 吉川弘文館, 1997.
- 佐藤道信, 『明治國歌と近代美術-美の政治學』, 吉川弘文館, 1999.
- 矢島國雄, 「博物館からみた植民地主義」, 『植民地主義と歴史學』, 刀水書房, 2004.
- 中村賢二郎, 「文化財保護制度概説」, ぎょうせい, 2005.

#### [논문]

#### 국문자료

- 김형만, 정순훈, 「일제의 문화재 약탈과 그 해결방안」, 『일제 식민지정책 연구논문집』, 광복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1995.

- 남궁승태, 「문화재보호법에 관한 고찰」, 『문화재정책논총』 6집,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 목수현, 「일제하 박물관의 형성과 그 의미」,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0.
- 박인균, 「한국 문화재보호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 백승길, 『문화재보호에 관한 외국사례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 오세탁, 『문화재보호법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2.
- 이윤상, 「1894~1910 재정 제도와 운영의 변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 전경수, 「한국 박물관의 식민주의적 경험과 민족주의적 실천 및 세계주의적 전망」, 『한국 인류학의 성과와 전망』, 松峴李光奎教授停年祈念論叢委員會, 1998.

#### 일문자료

- \_\_\_\_\_, 「朝鮮古蹟調査」, 『朝鮮學論考』, 藤田先生記念事業會刊, 1963(昭和39).

#### [정기간행물]

##### 국문자료

- 강봉원, 「미국의 문화재 현황과 관리」, 『고문화』 51호, 한국대학박물관학회, 1998.
- 高木博志, 박미정 역, 「近代 日本의 文化財 保護와 古代美術」, 『미술사논단』 11, 미술사연구소, 2000. 12.
- 김봉건, 「영국의 문화재보호 정책」, 『문화재』 22호, 1989.
- 김인덕, 「일제하의 자주적인 우리문화 지키기」, 『문화예술』, 문화예술진

- 홍원, 2003. 8.
- 김희태, 「우리나라의 문화재관리제도」, 『제2회 광주민속박물관대학 강좌』, 1997. 7. 12.
- 김희태, 「일본의 문화재관리와 유적보존」, 『전남문화재』 4집, 1991.
- 문명대, 「미술사와 문화재」, 『미술사학』, 한국미술사교육연구회, 1989.
- 박현수, 「식민지 문화 연구의 양면성」, 『일제의 문화재정책 평가 세미나』, 문화재관리국, 1996.
- 안철홍, 「야나기 무네요시의 ‘조선 예술론’을 비판한다.」, 『시사저널』 756호, 2004.
- 오세탁, 「일제의 문화재정책-그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문화재』 29호, 1996.
- 오세탁, 「日帝官學者들의 韓國史 敍述」, 『韓國史論』 제6집, 國史編纂委員會, 1979.
- 이상찬, 「伊藤博文이 약탈해 간 고도서 조사」, 『한국사론』 48집, 서울대, 2002.
- 이성시,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를 통해 본 식민지와 역사학」, 『한국문화』 제23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9. 9.
- 이인범, 「우리나라 미술관 제도의 성립과 전개」, 『근대미술사학』 4, 청년사, 1994.
- 정영목, 「문화재에 관한 한일간의 갈등-그 역사와 인식의 차이」, 『법학』 제44권 제3호, 서울대학교, 2003. 9.
- 太田秀春, 「근대 한일양국의 성곽인식과 일본의 조선 식민지정책」, 『한국사론』 49집, 서울대 국사학과, 2003.
- 황수영, 「일제기(日帝期) 문화재 피해자료(被害資料)」, 『고고미술자료 제22집』, 한국미술사학회, 1973.
- 황평우,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관리 실태와 대안」, 연세대학원신문, 2005.4.

## 일문자료

- 宮本延人, 「民族學と考古學」, 『日本考古學講座』第2券, 河出書房, 1955.
- 藤田亮策, 「朝鮮古文化財の保存」, 『朝鮮學報』第1號, 1951. 5.
- 小林生, 「東南アジアの考古學」, 『日本考古學講座』第2券, 河出書房, 1955.
- 三上次男, 「朝鮮考古學の發達」, 『日本考古學講座』第2券, 河出書房, 1955.
- 有光教一, 「私野朝鮮考古學」, 『季刊 三千里』 38~50, 1984~1986.
- 齋藤三, 『日本美術史』中央公論美術出版, 1943.
- 中村榮孝, 「新刊 『朝鮮史』 就いて」, 『朝鮮』 1932. 9.
- \_\_\_\_\_, 「朝鮮と美術教育-工學博士關野貞氏談」, 『美術新報』 203, 1910.
- 10.
- 飯野公子, 「朝鮮半島考への古學的關心-考古學會機關誌上にみる」, 『考古學史研究』 第7号, 1997. 12.
- 高橋潔, 「關野貞お中心とした朝鮮古蹟調行程」, 『考古學史研究』 第9号, 2001. 5.
- 梅原末治, 「日韓併合の其間に行なわれた半島の古蹟調査と保存事業にたずさわつた一考古學徒の回想録」, 『朝鮮學報』 第51号, 1969.
- 廣瀬繁明, 「初期の朝鮮建築・古蹟調査とその後の文化財保護」, 『考古學史研究』 第10号, 2003. 10.

## [일간지]

### 국문자료

- 강중구, 「중국 발해유적 훼손」, 『국민일보』, 2006. 11. 19.
- 박석규, 「“발해가 고구려 계승” 못 박겠다」, 『세계일보』, 2006. 11. 1.
- 박태균, 「정동칼럼-韓·日관계의 열쇠」, 『경향신문』, 2006. 9. 28.

## Abstract

### *A Study of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enacted in 1962*

Choi, Yun Jung

Department of Art Histor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which focused on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enacted in 1962 investigated the process of its being formed and its problems. For that, it explored the process in which *Japanese*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was generated and developed in the period when *Japanese* imperialism occupied Korea by force. It also studied the character of the act by dividing it into substance and historical background. Thus, it aims at presenting a specific method of protecting and succeeding to our cultural heritage by investigating a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our cultural properties in the two directions such as a system and improvement.

It is the most important national task to protect and manage our

cultural assets safely and hand them over to our descendants for ever. Nevertheless, Japanese imperialism and Western powers plundered Korea of them. They were destroyed in large quantities during the Korean War. In the meantime, they have severely suffered from chronic illegal excavation, robbery, and especially development-oriented economic growth after the 1960s.

The act before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1962 began with the Regulation on Property Management in *A Local Old-time School Belonging to the Confucian Shrine*, which was promulgated for the first time in 1910. After it, on September 1 1911, the Temple Act was enacted which was limited to a Buddhist temple but which included a small quantity of acts directl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in the regulation. Others include Historic Spot-Level Relics Preservation Rules(1916) and Chosun Treasure Historic Spot Scenic Beauty Natural Monument Conservation Society Official Regulations(1932). Chosun Treasure Historic Spot Scenic Beauty Natural Monument Conservation Act which was enacted in 1933 started the designation of 'treasure' as a typical act of registering and managing many relics.

After the 1945 Liberation of Korea, the act which had continued to maintain its effect was abolished when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was prepared in 1962. Korean cultural properties have been conserved and managed by the same act for the twenty years from that year to 1982. However, conserving and managing our cultural heritage exhibited operational loopholes and problems by following as they were the 'Conservation Act' by which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was abused by the colonial policy of *Japanese imperialism* and *Japanes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enacted in 1950.

I want to present some alternatives for preparing the institutional frame by which our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can overcome the problems and display its cultural capacity in the future. The first is to survey and accept foreign advanced policies. The second is to cultivate the expert who can understand and apply Korean real situation. The third is to *seek* various methods of cultural properties being returned. The fourth is to *make* legally institutional devices to *provoke* the social obligations of a museum and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civil organizations. The final is to broaden the scope of our cultural properties to North Korea and overseas location through cultural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argue with them about the questions of management and title. It will be unnecessary to repeat the necessity of revised law and governmental efforts for the alternatives.

Cultural assets as the precious materials *speaking* for history and culture are cherished common heritage by our people and state. Implying all sorts of ancestral wisdom they are themselves our history and pride. Thus, they are the valuable assets that the descendants to live on the earth not only in the present but in the future will also have to enjoy. We will have to transfer our culture and cultural heritage as valued heritage to our descendants.

## 부록

1. 한국·일본 문화재보호 관련 연표
2. 한국·일본 문화재보호법령
3. 조선보물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의한 보물 등록 고시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보 등록 고시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물 등록 고시.
6. 1916년, 1934년, 1962년 문화재 지정 등록 비교 표

[부록 1] 한국·일본 문화재보호 관련 연표

한국	일본
	1871년5월23일 고기구물보존방 (태정관포고 제251호) (古器旧物保存方)
	1890년6월28일 제국박물관출품규칙병동관특별관람규칙 (궁내성고시 제21호)
	1897년 6월 5일 고사사보존법(법률 제49호) (古社寺保存法)
	1897년11월 6일 고사사보존회규칙(칙령제406호)
	1897년12월15일 고사사보존법시행에관한건 (칙령 제446호)
	1897년12월15일 고사사보존법시행세칙 (내무성법 제35호)
	1907년11월 1일 제실박물관관제(황실령 제10호) (帝室博物館官制)
1908년 9월 창경궁 내(內) 이왕가박물관설치	
1910년 8월22일 한국병합(9월30일조선총독부설치)	
1911년 6월 3일 사찰령(제령 제7호) 9월1일 시행 (寺刹令)	
1911년 7월 8일 사찰령시행규칙(총령 제84호)	
1911년10월10일 사적조사 자료 수집의 건(관동첩제 290호) (史蹟調査資料蒐集の建)	
1915년11월 조선총독부박물관 설치의 건(총고 제296호) (朝鮮總督府博物館設置の建)	
1916년 7월 고적조사위원회규정(총훈제29호) (古蹟調査委員會規程)	
1916년 7월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총령제52호)	
1916년 7월 고적 및 유물에 관한 건(총훈 제30 호)	
	1919년4월10일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법률제44호) (史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法)
	1919년 5월 사적명승천연기념물조사회관제 (칙령 제258호)
	1919년10월20일 사적명승천연기념물조사회의사규칙 (의정)

		1919년12월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시행령 (칙령 제499호)	
		1919년12월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시행규칙 (내무성령 제27호)	
		1920년 1월31일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요목(要目) 결정	
		1920년 7월	사적명승천연기념물대장기재사항 (내무성결정)	
1921년10월	고적조사과설치 (조선총독부학무국내)			
1922년12월	조선사편찬위원회규정(훈령 제64호) 朝鮮史編修會	1922년6월22일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보존에관한건 의명통첩(발리(發理) 제25호)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	
1925년 6월 6일	조선사편수회관제(칙령 제218호) (朝鮮史編修會官制)	1925년 6월24일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보존시설등에관 한의명통첩(발리 제7호)	
1926년4월	경성제국대학설치 (법문학부, 의학부) (京城帝國大學設置)	1928년12월6일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 사무에 관해 지방장관에통첩의건(발종(發宗)제81호) (史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事務に關し地 方長官へ通牒の件)	
		1929년3월28일	국보보존법(법률 제17호) (國寶保存法)	
		1929년11월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지정~문부성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문부성훈령제22호)	
1931년8월	조선고적연구회설치	1933년 5월30일	중요미술품등의보존에관한법률(법률제 43호) (重要美術品等の保存に關する法律)	
1933년 8월 9일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칙령 제6호)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			
1933년12월 5일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시행규칙(총독부령제136호)	1950년 5월30일	문화재보호법 제정 (법령 제 514호) (文化財保護法)	
1962년 1월10일	문화재보호법 제정 (법률 제961호) (文化財保護法)			

## [부록 2] 한국·일본 문화재보호법령

### 『사찰령 (寺刹令)』 1911년 6월, 제령 제7호.

제1조 사찰을 병합, 이전 또는 폐지하려고 할 때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의 기지(基址) 또는 명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그러하다.

제2조 사찰의 기지 및 가람(伽藍)은 지방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전법(傳法), 포교, 법요집행(法要執行) 및 승니(僧尼) 지주(止住)의 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시킬 수 없다.

제3조 사찰의 본말(本末)관계, 승규(僧規), 법식(法式), 기타 필요한 사법(寺法)은 각 본사(本寺)에서 이를 정하고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사찰에는 주지(住持)를 두어야 한다.

주지는 그 사찰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 및 법요집행의 책임을 지고 사찰을 대표한다.

제5조 사찰에 속하는 토지, 삼림(森林), 건물, 불상, 석물(石物), 고문서화(古文書畫), 기타의 귀중품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제6조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 본령에 규정하는 것 외에 사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부칙

본령 시행의 기일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조선법령집람』, 제국지방행정학회조선지부, 1938.

###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 1916년 7월, 총령 제52호.

제1조 본령에서 고적이라 칭하는 것은 패총(貝塚), 석기, 골각기류(骨角器類)를 포유(包有)하는 토지 및 수혈(竪穴)등의 선사유적, 고분과 도성(都城), 궁전, 성책(城柵), 관문(關門), 교통로, 역참(驛站), 봉수(烽燧), 관부(官府), 사우(祠宇), 단묘(壇廟), 사찰, 도요(陶窯) 등의 유적 및 전적(戰跡) 기타 사실(史實)에 관계있는 유적을 말하며, 유물이라 칭하는 것은 연대(年代)를 거친 탑(塔), 비(碑), 종(鐘), 금석물(金石物), 당간(幢竿), 석등(石燈) 등으로서 역사, 공예, 기타 고고(考古)의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조선총독부에 별기(別記)양식의 고적 및 유물대장(古蹟及遺物臺帳)을 비치하고 전조의 고적 및 유물중 보존의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해 두고 이를 등록한다.

1. 명칭
2. 종류 및 형상대소(形狀大小)
3. 소재지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씨명(氏名) 혹은 명칭

5. 현황
6. 유래 전설 등
7. 관리보존의 방법

제3조 고적 또는 유물을 발견한 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3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지역경찰서장(경찰서의 사무를 취급하는 헌병분대 또는 분견소(分遣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계출(届出)해야 한다.

경찰서장이 전항의 계출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전조의 사항을 조사하여 조선총독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 고적 또는 유물에 대하여 조선총독부에서 이를 고적 및 유물대장에 등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당해(當該)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그 대장의 등본을 당해 경찰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전조의 계출이 있는 고적 또는 유물에 대하여 고적 및 유물대장에 등록치 않은 것은 신속히 당해 경찰서장을 경유, 그 뜻을 계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 고적 및 유물대장에 등록된 물건의 현상을 변경, 이전, 수선하거나 처분하려고 할 때 또는 그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시설을 하려고 할 때에는 당해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밝혀 경찰서장을 경유, 미리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명칭
2. 변경, 이전, 수선, 처분, 또는 시설의 목적
3. 변경, 이전, 수선, 처분 또는 시설을 하려는 자는 그 방법 및 설계도와 비용의 견적액(見積額)
4. 변경, 이전, 수선, 처분 또는 시설의 시기

제6조 고적 또는 유물에 대하여 대장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신속히 이를 조선총독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 경찰서장이 유실물법(遺失物法)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장물(埋藏物) 발견의 계출을 받았을 때에는 동 법에 의한 계출사항 외에 동 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설명하기에 족한 사항을 밝혀 경무총장(警務總長)을 경유, 조선총독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이백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본령은 대정(大正) 5년(1916년) 7월 7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 1933년 8월 9일, 칙령 제6호.

제1조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蹟), 회화, 조각, 공예품 기타의 물건으로서 특히 역사의 증경 또는 미술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은 조선총독이 이를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패총(貝塚), 고적, 사지(寺址), 요지(窯址) 기타의 유적, 경승(景勝)의 지(地) 또는 동물, 식물 지질, 광물, 기타 학술연구의 자료가 될 수 있는 물(物)로서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조선총독이 이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조 조선총독이 전조의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조선총독부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이하 '보존회'라 칭한다)에 자문해야 한다.

전조의 지정 이전에 있어서 급시(急施)를 요하고 보존회에 자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선총독은 가지정(假指定)을 할 수 있다.

제3조 조선총독은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에 관하여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로 하여금 필요한 장소에 들어가고, 조사에 필요한 물건의 제공을 요구하고, 측량조사를 하거나 또는 토지의 발굴, 장애물의 변경 제각(除却) 기타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관리는 그 신분을 증명할 증표를 휴대해야 한다.

제4조 보물은 이를 수출 또는 이출(移出)하지 못한다. 다만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차한(此限)에 부재한다.

조선총독이 전항의 허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보존회에 자문해야 한다.

제5조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에 관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끼치게 될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조선총독은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의 보존에 관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 제한하고 또는 필요한 시설을 명할 수 있다.

전항의 시설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고로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조선총독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존회에 자문해야 한다. 다만, 경이(輕易)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한에 부재한다.

제8조 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이를 조선총독에게 제출(届出)해야 한다. 보물을 멸실 또는 훼손했을 때에도 같다.

제9조 보물의 소유자는 조선총독의 명에 의하여 1년 내의 기간에 한해 이왕가(李王家), 관립 또는 공립의 박물관, 미술관에 그 보물을 출진(出陳)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사법용(祭祀法用) 또는 공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제10조 전조의 규정에 의해 보물을 출진한 자에 대하여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급금(補給金)을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나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때문에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출진한 보물이 그 출진 중 불가항력에 인한 것이 아니면서 멸실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조선총독은 그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출진한 보물에 있어 그 출진 중 소유자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신 소유자는 당해 보물에 관해 본령이 규정한 구 소유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13조 조선총독은 지방공공단체를 지정하여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의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항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공공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전항의 비용에 대하여서는 국고로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공익상 기타 특수한 사유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선총독은 보존회에 자문하여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 조선총독은 제1조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을 하거나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을 해

제한 때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또한 당해 물건이나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지정된 물(物)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 조선총독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에 관하여 별단(別段)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7조 사찰의 소유에 속하는 보물은 이를 차압(差押)할 수 없다.  
전항의 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폐총, 고적, 사찰, 성지, 요지 기타 유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발굴, 기타 현상을 변경하지 못한다.  
전항의 유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것을 발견한 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조선총독은 본령이 규정하는 그 직권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물을 유출 또는 이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원(圓)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보물을 손괴(損壞), 훼손(毀棄) 또는 은닉(隱匿)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한다.

제22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한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물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그 형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한 자
2.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5조나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얻은 물건을 양수받은 자

제23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관리의 직무집행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여 조사에 필요한 물건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또는 조사에 필요한 물건으로서 거짓된 것을 제공한 자는 2백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 제8조 또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해 제출을 하지 않은 자는 백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본령 시행의 기일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조선법령집람』, 제국지방행정학회조선지부, 1938.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1962. 법률 96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재의 정의) 본법에서 문화재라 함은 다음에 계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조물, 전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기타의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이하 유형문화재라 한다)
2.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이하 무형문화재라 한다)
3. 패총, 고분, 성지, 궁지, 요지, 유물포함층 기타사적지와 경승지, 동물, 식물, 광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또는 관상상 가치가 큰 것(이하 기념물이라 한다)
4.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기타의 물건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이하 민속자료라 한다)

## 제2장 문화재위원회

제3조 (설치)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제4조 (의결사항) 문화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중요유형문화재(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기념물(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2. 전호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문화재(이하 지정문화재라 한다)의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과 그 해제
3. 지정문화재의 관리 또는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4. 지정문화재의 현장변경 또는 수출이나 국외반출의 허가
5. 지정문화재의 환경보전을 위한 제한, 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명령
6. 지정문화재의 매수
7. 매장문화재의 조사를 위한 발굴의 시행
8. 기타 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5조 (분과위원회) ①전조의 사항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및 제3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문화재위원회 위원은 그 전공분야에 따라 전항의 각분과위원회의 1에 분속한다.

③제1분과위원회는 제2조제1호의 유형문화재에 관한 전조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제2분과위원회는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에 관한 전조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제3분과위원회는 제2조제3호의 기념물에 관한 전조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지정문화재

### 제1절 지정

제7조 (보물, 국보의 지정) ①문교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2조제1호의 유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문교부장관은 전항의 보물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전항의 절차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문교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2조제2호의 무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문교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2조제3호의 기념물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중요민속자료의 지정) 문교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2조제4호의 유형의 민속자료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 문교부장관은 제7조,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그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이나 그 보호물의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문교부장관이 전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당해 지정문화재(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보호물 또는 그 보호물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그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정의 효력발생시기) 제7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 (지정의 해제) ①지정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또는 공익상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문교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당해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2조제2항과 전조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지정문화재의 등급과 구분)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급을 부치거나 구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 (가지정) ①문화재로서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여가가 없을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문화재관리국장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화재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은 그 가지정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하면 무효로 한다.

③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단, 이 경우에는 관보의 고시는 하지 아니하며 그 효력은 제1항에 의하여 가지정된 문화재(이하 가지정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17조 (관리방법의 지시) 문교부장관은 지정문화재의 소유자(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 그 점유자. 이하 같다) 또는 보유자에 대하여 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 (소유자등의 관리의무와 관리자) ①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문교부장관 기타 행정기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당해 문화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를 관리 보호하여야 한다.

②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신하여 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의 책임을 질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전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자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또는 그 소유자나 관리자에 의한 지정문화재의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지방공공단체를 지정하여 당해 지정문화재를 관리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있어서는 문교부장관은 사전에 당해 지정문화재의 소유자와 지정하고자 하는 지방공공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문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당해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당해 지방공공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공공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있었을 때에는 당해 지정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⑥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제17조 및 전조 제1항의 규정은 관리단체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허가사항) ①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또는 식물을 그 도래 또는 생장하는 구역이외로 반출하는 것
2. 전호이외의 지정문화재를 그 보관 장소 또는 연고관계가 있는 장소로부터 반출하는 것
3. 지정문화재중 국보, 보물을 촬영, 모사 또는 모조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것
4. 중요무형문화재를 녹음, 촬영하거나 악보, 대본 등을 제작하거나 또는 이를 승인하는 것
5. 지정문화재의 현장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
6. 전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내용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이나 지시사항을 변경하는 것

②전항의 규정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의 소유자가 그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③문교부장관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허가에 조건을 부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④지정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려고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각의 의결을 거쳐서 허가하여야 한다.

제21조 (허가취소) 문교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자의로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허가조건이나 지시사항에 위반하거나 기타사유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 (행정명령) ①문교부장관은 지정문화재의 관리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에 계기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1. 지정문화재의 관리상황이 그 지정문화재의 보존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

한하는 명령

2. 지정문화재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선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를 해임케 하거나 변경케 하는 명령
3.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하여 수리 기타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해물을 제거하게 하는 명령
4.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하여 전 각호 이외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명령

② 문교부장관은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들로 하여금 실시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고부담으로써 스스로 전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 (양도제한) 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그 지정문화재를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 국가 또는 박물관등에서 매수를 원할 때에는 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여야 한다.

제24조 (신고사항) ①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 및 경과 등을 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 제2호의 경우에는 신규소유자연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지정문화재의 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경하였거나 해임하였을 때
2. 지정문화재의 소유자에 변동이 있었을 때
3.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동이 있었을 때
4. 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호구역의 지명, 지번, 지목, 지적 등에 변경이 있었을 때
5. 지정문화재의 보관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
6. 지정문화재가 멸실,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때
7. 제20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동조 제4항에 의한 허가를 받고 지정문화재를 반출 또는 수출하거나 이를 다시 반입 또는 수입하였을 때
8. 제2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한 허가를 받고 지정문화재의 촬영, 모사, 모조 등을 하거나 녹음, 촬영 또는 악보, 대본 등의 제작을 완료하였을 때
9. 제20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의한 허가를 받고 지정문화재의 현장변경 기타의 조치를 착수하거나 완료하였을 때
10. 제22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한 명령을 받고 지정문화재의 수리 또는 시설의 설치 기타 장해물제거 등의 조치에 착수하거나 완료하였을 때
11. 지정문화재를 매도하고자 할 때

② 전항의 규정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유형문화재의 소유자가 그 문화재를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이를 다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보조금) ① 지정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한 다음의 경비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체가 지정문화재를 관리함에 필요한 경비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시행함에 소요되는 경비
3. 전항의 경우이외에 지정문화재의 관리, 보호 또는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단, 소유자가 그 부담능력이 없거나 그 능력이 빈약한 경우에 한한다.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그 지정문화재의 수리기타공사에 관하여 지휘 감독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보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관리 사용하게 한다.

제26조 (보조금의 반환)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그 보조금의 교부를 정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전조 제1항의 교부 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2. 보조금의 교부 목적 대상물의 수리 기타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제21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전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목적 공사가 준공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5. 보조금에 의하여 수리 기타 공사를 시행한 지정문화재를 유상으로 양도하였을 때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액수에 관한 산정기준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손실보상) ①다음에 계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1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보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

제28조 (공공단체의 경비부담) 지방공공단체는 그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는 지정문화재 외의 그 관리 구역 내에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그 관리, 보호 또는 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 (준용)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제6호 및 동 조제3항·제4항, 제21조,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제23조, 제2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제9호 및 제11호와 제27조의 규정은 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공개

제30조 (공개) 지정문화재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 (부동산에 속하는 지정문화재의 공개)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중 건조물 또는 토지 기타 고착물에 부착된 지정문화재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동물자체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종교의식이나 지정문화재에 관한 사무집행상 또는 공사실시상 필요한 때
2.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전호 이외의 사유로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문교부장관이 지정문화재의 훼손방지상의 필요로 그 공개를 제한 또는 중지를 명하였을 때

②문교부장관은 전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 (동산에 속하는 지정문화재의 공개) ①전 조 제1항에 계기한 것 이외의 지정문화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문교부장관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립박물관기타의 장소에 공개를 위하여 출품할 것을 명령받았을 때. 단,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전호 이외의 방법으로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조치의 명령을 받았을 때
- ②전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공중의 관람에 공하

기 위하여 지정문화재를 그 보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공개하거나 또는 타인이 주취하는 전람회 등에 출품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출품을 받는 전람회 등의 주최기관은 사전에 그 취지를 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명령할 수 있다.

제33조 (중요무형문화재의 공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그 중요무형문화재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 (공개비용) 제32조 제1항 제1호의 명령에 의한 지정문화재의 출품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동조 제1항 제2호 또는 전조에 의한 공개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한다.

제35조 (급여금 및 보상금) ①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32조 제1항 제1호의 명령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를 출품하였을 때에는 국고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들에게 급여금을 지급한다.

②제32조 제1항의 명령에 의한 지정문화재의 출품 또는 공개 중에 그 지정문화재가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국가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단,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27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 (관람료의 징수) ①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관람료의 금액에 관하여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절 조사

제37조 (보고징수) 문교부장관은 지정문화재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로부터 지정문화재의 현장 또는 관리, 수리 기타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38조 (직권에 의한 조사) ①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문화재의 현장 또는 관리, 수리 기타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착수 전에 그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있어서 그 조사원은 관계자에게 필요한 물건의 제공 기타의 협조를 요구하거나 또는 지정문화재의 현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기타 조사상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전항의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는 국가에서 그 손실을 보상한다. 제27조 제2항의 규정은 본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조사요청) ①지정문화재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당해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청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문화재를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 (조사원의 신분증표)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준용) 제37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제7조 내지 제11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가지정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와 가지정문화재의 조사에 이를 준용한다.

#### 제4장 매장문화재

제42조 (발견신고)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 또는 물건에 포장된 문화재(이하 매장문화재라 한다)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현장을 변경함이 없이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 (발굴의 허가 등) ①연구의 목적으로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발굴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목공사 기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발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문교부장관은 전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굴의 중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발굴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매장문화재의 현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국가에 의한 발굴) ①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발굴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④제27조,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5조 (처리방법) ①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 문교부장관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때에는 이를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유실물법 제13조로써 준용되는 동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13조로써 준용되는 동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46조 (경찰서장등의 매장문화재 처리방법) ①유실물법에 의하여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경찰서장에게 제출된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유실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함과 동시에 즉시 그 사실을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당해물건을 감정하고 감정결과 그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경찰서장에게 통지하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그 취지를 부하여 당해 물건을 경찰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7조 (국고귀속과 보상금) ①제45조 제1항 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인정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것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국고는 당해문화재의 발견자 또는 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유실물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와 발견자 또는 습득자가 동일

인이 아닌 때에는 보상금을 토지의 소유자와 발견자 또는 습득자에게 균분하게 지급한다. 단, 발견에 있어서 경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액의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한 문화재로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 또는 습득자나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들이 전항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에 대신하여 그 보상금액에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양여할 수 있다.

제48조 (유실물법의 준용) 매장문화재에 관하여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실물법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장 국유문화재에 대한 특례

제49조 (적용상 특례) 국가 또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본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50조 (관리 및 총괄청) ① 국유에 속하는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교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총괄한다. 단, 국유의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가 문교부장관 이외의 자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경우 또는 문교부장관 이외의 자가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이 국유재산법 제9조의 관계기관의 장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을 정한다.

②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1조 (상이한 회계간의 무상이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를 문교부장관이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을 달리하는 회계 간에 있어서 관리환 또는 보관환을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무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52조 (절차 및 방법의 특례) ①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를 중요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지정하는 경우 또는 그 지정이나 가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본법에 의하여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행하는 통지는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재를 관리하는 관리청에 대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 또는 토지 기타 물건에 관하여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31조, 제32조, 제36조 내지 제38조, 제42조 및 제4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문화재 또는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 함은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을 말한다.

제53조 (동의 및 보고) ① 전조의 관리청은 제20조(제29조로써 제20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그 관리에 속하는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대부, 교환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관리청은 제24조(제29조로써 제24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취득하였을 때
2.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이관을 받았거나 그 보관청을 변경하였을 때

제54조 (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국유에 속하는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단, 그 관리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공단체 또는 공익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을 부쳐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55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에는 그 신소유자는 본법 또는 본법에 기한 명령에 의하여 문교부장관 기타 행정기관이 행하는 명령, 지시 기타 처분으로 인한 구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소유자에게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예외로 한다.

제56조 (이의신청) ①문교부장관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문화재관리국장이나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한 다음에 제기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문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체의 지정
2. 제2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변경 등의 허가 또는 불허가
3.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제한 기타 명령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처분의 상대자와 처분의 통지를 받을 자에 있어서는 처분이 있는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타의 자에 있어서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문교부장관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7조 (표창)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이를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매장문화재를 발견 신고하여 국보로 지정받게 한 자
2.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노력 또는 재력을 희생하여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멸실, 도난, 훼손을 방지한 자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이외의 자로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관하여 노력 또는 재력을 희생하여 현저한 공적을 남긴 자
4.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보호 및 공개의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제58조 (직권의 위임) 문교부장관은 본법에 규정된 직권의 일부를 문화재관리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7장 벌칙

제59조 (무허가수출의 죄) 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수출 또는 국외에 반출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를 수출 또는 국외에 반출한 자는 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한다.

제60조 (손상 또는 은닉의 죄) ①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문화재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문화재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 (동전) ①전조에 규정된 것 이외의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을 제외한다)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문화재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 (가중죄)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59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수호하는 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3조 (형법의 준용)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 또는 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 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동법중 전기조항에 관계되는 법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처벌한다.

1.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2.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제64조 (사적 등어의 일수죄) ①물을 넘겨 지정 또는 가지정된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의 해당구역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구역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 (기타 일수죄) 물을 넘겨 전조에 규정한 것 이외의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소재구역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 (미수범) 제59조 내지 제61조와 전2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제67조 (과실범) 과실로 인하여 제64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을 침해한 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 (기타의 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가 없이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그 보관 또는 연고의 장소나 구역 외로 반출하는 자
2. 허가 없이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현장을 변경하거나 기타 그 관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자

②전항의 경우에 그 문화재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보존, 수리 또는 복구 등에 관한 명령이나 금지 또는 제한의 조치에 위반한 자
2.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하거나 발굴증지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그 현장을 변경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수리, 복구 등의 공사나 멸실, 훼손 등에 관한 예방조치를 거절, 기피 또는 방해한 자
4. 제2호의 자료부터 매장문화재를 양수한 자

제70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환경보전을 위한 금지제한 또는 명령에 위반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거절,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본법 또는 본법에 기한 명령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절,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자
5.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존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태만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당해문화

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제71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허가 없이 지정문화재(국보, 보물)를 촬영, 모사 또는 모조하거나 이를 승인한 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를 녹음, 촬영, 악보, 대본 등을 제작하거나 이를 승인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문화재의 출품 또는 공개의 명령이나 이에 관한 중지, 제한 또는 금지의 조치에 위반한 자
3. 허가 없이 지정문화재를 그 보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공개하거나 전람회 등에 출품한 자
4. 인가 없이 지정문화재의 관람료를 징수한 자
5. 허위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제72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서 본법에 의한 공개의무를 태만히 한 자
2. 본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태만히 한 자

제7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본장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부칙 <제961호,1962.1.1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서기1933년 8월 제령 제6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규정)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보물(국보),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것은 본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가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되,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하고 가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고사사보존법(古社寺保存法)」 1897년 6월10일, 법률 제49호.

제1조 고사찰(古社寺)에서 그 건조물 및 보물류를 유지 수리하는 것에 보존금(保存金)의 하부(下付)를 내무대신(內務大臣)이 출원(出願)할 수 있다.

제2조 국비(國費)로 보조 보존해야 될 사찰의 건조물 및 보물류는 역사의 증정(證徵), 유서(由緒)의 특수(特殊) 또는 제작의 우수에 있어서 고사사보존회에 자문해서 내무대신이 이것을 정한다.

제3조 전조의 건조물 및 보물류의 수리는 지방장관이 지휘 감독한다.

제4조 사찰의 건조물 및 보물류에 있어서 특히 역사의 증정 또는 미술의 모범이 돼야 되는 것은 고사사보존회에 자문해서 내무대신이 특별 보호 건조물 또는 국보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전항의 자격을 갖고 있는 물건은 내무대신이 관보에 고시한다.

제5조 특별보호건조물 및 국보는 이것을 처분하거나 압류한다. 단 내무대신의 허가를 받고 국보를 공개 전람장에 출품 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6조 전조의 물건은 신직(神職)(관국 폐사(官國幣社)에서는 궁사(宮司), 부현향사(付懸鄉社)에서는 사사(社司), 촌사(村社, 마을의 수호신을 모신 당, 이하에서는 사장(社掌)) 혹은 주직(住職)이 이것을 감수(監守)해서 내무대신의 감독을 받는다. 단 내무대신의 허가를 받고 따로 감수자를 둘 수 있다.

제7조 사찰(社寺)은 내무대신의 명으로 관립 또는 공립의 박물관에 국보를 출품 하는 의무가 있다. 단 제진법용(祭典法用)에 필요한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항의 명에 대해서는 소원(訴願)할 수 있다.

제8조 전조에 있어서 국보를 출품 하는 사찰에는 명령에 정하는 표준에 따라서 국고에게서 보급금(補給金)을 지급한다.

제9조 신직, 주직, 다른 감수자에 있어서 내무대신의 명을 어기고 국보를 출품할 때는 내무대신은 그 출품을 강요할 수 있다.

제10조 사찰에 납부하는 보존금은 지방장관이 이것을 관리한다. 보존금은 예산으로 납부한다. 단 정산에서 나머지가 있을 때는 내무대신은 이것을 환원할 수 있다.

제11조 사찰에 납부한 보존금은 압류할 수 있다.

제12조 제10조 및 제11조의 보존금은 그것의 이자를 포함한다.

제13조 감수자가 그 감수하는 곳의 국보를 절취(竊取), 훼손(毀棄), 은닉(隱匿)하거나 다른 물건과 변환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어길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중금고(重禁錮)에 처한다. 제5조의 물건이 있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양수(讓受), 빌리고(借受), 담보(擔保), 기장(奇藏)하여 자는 6월 이상 3년 이하의 중금고에 처하고 5엔 이상 50엔 이하에 벌금을 부가한다.

제14조 감수자가 태만(怠慢)하여 국보를 망실 혹은 훼손할 때는 50엔 이상 5백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는 지방재판소의 명령으로 지불한다. 단 그 명령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되고 과태료는 검사의 명령으로 징수한다. 징수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6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이 경우의 검사의 명령은 집행의 효과를 가진다.

제15조 제7조에 따라서 출품할 국보의 감수자가 고의태만(故意怠慢)하여 국보를 망실 혹은 훼손할 때는 국고의 명령에 정하는 평가의 방법에 따라서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단 그 평가액에 관해서는 재판소에 출소(出訴)할 수 있다.

제16조 본법에 정하는 보존금 및 보급금에서 국고에 있어서 지출해야 되는 금액은 한 해에 15만엔에서 20만엔으로 한다.

부칙

제17조 본법 시행전 사찰에 납부하는 보존금에 관해서 내무대신은 제10조에서 제12조를 적용 할 수 있다.

제18조 제4조에 해당하는 물건은 사찰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제7조 제1항에 있는 박물관에 출품하는 것을 허가해서 보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명소 구적에 관해서는 사찰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본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 본법 시행상 필요한 규정은 명령으로 그것을 정한다.

文化財保護委員會, 『文化財保護の歩み』, 文化財保護委員會, 1960(昭和35).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史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法)」 1919년 4월10일, 법률 제44호.

제1조 본법을 적용해야 하는 사적명승천연기념물(史蹟名勝天然記念物)은 내무대신(內務大臣)이 지정한다.  
전항의 지정 이전에 있어서 필요할 때는 지방장관이 그것을 지정할 수 있다.

제2조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조사에 관계되어 필요한 때는 지정의 전후를 불문하고 해당 관리는 다른 토지 또는 인접지에 출입 토지의 발굴 장애물을 철거하고, 그 외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제3조 사적명승천연기념물에 관계되어 다른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보존에 영향을 미쳐야 할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제4조 내무대신은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보존에 관계되어 지역을 정해 일정한 행위를 금지, 혹은 제한해 또는 필요한 시설을 명한다.  
전항의 명령, 혹은 처분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개인에 대해서는 명령의 의해 정부가 이것을 보상한다.

제5조 내무대신은 지방공공단체를 지정해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의 관리를 시킬 수 있다  
전항의 관리에 필요로 하는 비용은 해당 공공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국고는 전항의 비용에 대해 다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해 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6월 이하의 금고, 혹은 구류 또는 백엔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에 처한다.

부칙

1. 법시행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
2. 법시행의 기일은 명령으로 정한다.
3. 고사사보존법(古社寺保存法) 제19조는 본법 시행의 날부터 폐지한다.

文化財保護委員會, 『文化財保護の歩み』, 文化財保護委員會, 1960(昭和35).

「국보보존법(國寶保存法)」 1929년 3월28일, 법률 제17호.

제1조 건조물, 보물, 기타 물건에 있어서 역사의 증징(證徵) 또는 미술의 모범에 돼야 되는 것은 주무대신(主務大臣)이 국보보존회(國寶保存會)에 자문해서 그것을 국보로서 지정할 수 있다.

제2조 주무대신이 전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할 때는 그 뜻을 관보로 고시하고 당 물건의 소유자에 통지한다.

제3조 국보는 그것을 수출(輸出) 또는 이출(移出)하는 것을 못한다. 단 주무대신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렇지 않다.

제4조 국보의 현상(現狀)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주무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유지수리(維持修理)를 할 때는 그렇지 않다.

제5조 주무대신은 전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국보보존회에 자문해야 한다.

제6조 국보의 소유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명령이 정하는 곳으로 소유자에게서 주무대신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국보의 멸실 또는 훼손할 때도 같다.

제7조 국보의 소유자는 주무대신의 명령으로 일년 내의 기간에 한하여 황실, 관립 또는 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그 나라에 국보를 출품하는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단 제사비용 또는 공무집행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전항의 명령에 대해서 불복(不服)이 있을 때에는 소원(訴願)할 수 있다.

제8조 전조의 규정으로 국보를 출품하는 자에 대해서는 명령의 정하는 곳으로 국고의 보급금을 교부한다.

제9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출품하는 국보는 그것이 출품 중 멸실 또는 훼손할 때에는 명령의 정하는 곳에 있어서 국고에서 그 소유자에 대해서 통상 생겨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단 불가항력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전항의 손해보상액은 주무대신이 결정한다.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통지의 날부터 3월 내에 통상재판소(通常裁判所)에 출소할 수 있다.

제10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출품할 국보에 있어서 출품 중 소유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신소유자는 해당 국보에 관해서 본법에 규정할 구소유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11조 공익상 기타 특수(特許)의 이유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주무대신이 국보 보존회에 자문해서 국보의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다.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정 해제를 할 때에는 그 뜻을 관보로 고시하고 해당 물건의 소유자에 통지한다.

제12조 신사(神社) 또는 사원(불당을 포함, 이하 같음)의 소유에 속하는 국보는 신사에 있어서 신직(神職)(관국 폐사(官國幣社)에서는 궁사(宮司), 부현향사(付懸鄉社)에서는 사사(社司), 촌사(村社)에 있어서는 사장(社掌)), 사원에 있어서는 주직(불당에 있어서 담당 승려)이 그것을 관리한다. 단 주무대신의 허가를 받고 다른 관리자를 정할 수 있다.

제13조 신사 또는 사원의 소유에 속하는 국보는 그것을 처분하거나, 담보 또는 압류할 수가 없다. 단 주무대신의 허가를 받고 처분하거나 담보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주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안 할 때는 국보보존회에 자문해야 한다.

주무대신의 허가를 안받고 신사 또는 사원의 소유에 속하는 국보를 처분하거나 담보할 때는 그것은 무효가 된다.

제14조 신사 또는 사원의 소유에 속하는 국보를 유지수리하기 어려울 때는 주무대신이 국보 보존회에 자문해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 보조금은 예산액으로 교부할 수 있다. 기 경우에 있어서 정산의 과잉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환부(還付)할 수 있다.

제16조 보조금 및 보급금으로서 국고에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은 매년도 15만엔 이상 20만엔 이하로 한다. 전항의 금액이외에 특히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정하는 곳에 따라서 임시 보조금 또는 보급금을 지출할 수 있다.

제17조 국보보존회의 조직 및 권한에 관하는 사항은 본법에 규정해서 외칙령으로 그것을 정한다.

제18조 신사 및 사원의 소유에 속하는 국보의 관리에 관하는 사항은 명령으로 그것을 정한다.

제19조 나라의 소유에 속하는 국보에 관해서는 칙령으로 특별히 정할 수 있다.

제20조 주무대신의 허가 없이 국보를 수출 또는 이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2천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국보를 파괴, 훼손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5백엔 이하의 벌금에 처벌한다.

전항의 국보 자기의 소유에 관계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2백엔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에 처한다.

제22조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그것을 안 받아서 국보의 현상을 변경할 때에는 5백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3조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해서 신고를 안하는 자는 8백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4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출품하는 국보의 관리자 또는 신사 혹은 사원의 소유에 속하는 국보의 관리자 태만으로 그 관리하는 국보를 멸실 또는 훼손할 때에는 5백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5조 비송사건수속법(非訟事件手續法) 제2백6조 내지 2백8조의 규정하는 과태료에 있어서 그것을 준용한다.

#### 부칙

1. 본법의 시행 기일은 칙령으로 그것을 정한다.
2. 고사사보존법(古社寺保存法)은 폐지한다
3. 고사사보존법에 따라서 특별 보호 건조물 또는 국보의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정한 물건은 본법에 따라서 국보로서 지정하는 물건이라고 간주한다.
4. 고사사보존법에 따라서 납부한 보존금은 그것을 본법에 따라서 교부하는 보조금이라고 간주한다.

文化財保護委員會, 『文化財保護の歩み』, 文化財保護委員會, 1960(昭和35)

「중요미술품등의 보존에 관한 법률(重要美術品等の保存に関する法律)」 1933년 4월 1일, 법률 제43호.

제1조 역사상 또는 미술상 특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물건(국보는 제외)을 수출 또는 이출하려고 하는 자는 주무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현존자(現存者)의 제작과 관련이 있는 것, 제작 후 50년을 지난 것 및 수입 후 일 년을 안 지난 것은 그렇지 않다.

제2조 전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출 또는 이출에 첨부 허가를 필요로 하는 물건은 주무대신이 그것을 인정(認定)하고 그 뜻을 관보로 고시하고 해당 물건의 소유자에 통지해야 한다.

전항(前項)의 규정에 따라서 인정(認定)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매매, 교환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해당 물건의 기탁을 받는 점유자 또한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주무대신은 제1조의 규정에 따라서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 신청의 일로부터 일년이 넘지 않는 기간 내에 해당 물건을 국보보존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보로서 지정 또는 전(前)조항의 규정으로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4조 인정, 그의 취소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인정 물건의 소유자에 첨부 변경 있는 경우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명령으로 그것을 정한다.

제5조 주무대신의 허가 없이 제2조의 규정으로 인정 물건을 수출 또는 이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8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의 날부터 시행한다.

文化財保護委員會, 『文化財保護の歩み』, 文化財保護委員會, 1960(昭和35).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1950년 5월30일, 법령 제 51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문화재를 보호하고 또한 그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세계 문화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재의 정의)

1. 이 법률에서 문화재라 함은 다음에 계기(偈記)하는 것을 말한다.

- 1) 건조물(建造物), 회화, 조각, 공예품(工藝品), 서적(書跡), 전적(典籍), 고문서, 기타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 및 고고자료(이하 “유형문화재”라 한다)
- 2) 연극, 음악, 공예기술, 기타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에 있어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이하 “무형문화재”라 한다)
- 3)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 및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기타의 물건으로

서 우리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이하 “민속자료”라 한다)

4) 패총(貝塚), 고분(古墳), 도성적(都城跡), 성적(城跡), 구택(舊宅) 기타의 유적으로써 우리나라에 있어 역사상 또는 학술상 가치가 높은 것, 정원, 교량, 협곡, 해변(海濱), 산악, 기타의 명승지로서 우리나라에 있어 예술상 또는 관상상 가치가 높은 것 그리고 동물(생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로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학술상 가치가 높은 것(이하 “기념물”이라 한다)

2. 이 법률의 규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7조 제55조 제1항 제4호, 제88조, 제94조 또는 제115조의 규정을 제함) 중 [중요문화재]에는 국보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3. 이 법률의 규정 (제21조 제2항 제15호 또는 제16호, 69조, 제70조, 제71조, 제77조, 제83조 제1항 제4호, 제88조와 함께 제94조의 규정을 제함) 중 [사적명승천연기념물]에는 특별사적명승천연기념물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제3조 (정부 혹은 지방공공단체의 임무)

정부 혹은 지방공공단체는 문화재가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등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동시에 장래의 문화의 향상 발전의 기초를 이루는 것임을 인식해, 그 보존이 적절하게 행하여 질 수 있게 주도의 주의로서 이 법률의 취지를 위해 철저히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

제4조 (국민, 소유자 등의 심구(心構))

1. 일반 국민은 정부 혹은 지방공공단체가 그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조치에 성실하게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2. 문화재의 소유자 그 외의 관계자는 문화재가 중요한 국민적 재산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공공을 위해 중요하게 보존하는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한 이것을 공개하는 등 그 문화적 활용에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

3. 정부 혹은 지방공공단체는 이 법률의 집행에 맞춰서 관계자의 소유권 및 그 외의 재산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장 문화재보호위원회

제1절 총칙

제5조 (설치)

1. 국가행정 조직법(소화23년 법률 제120호)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바탕으로 문부성(文部省)의 외국(外局)으로서 문화재 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독립해서 그 직권을 행한다.

제6조 (임무)

위원회는 문화재의 보존 또는 활용, 문화재에 관한 조사연구 외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를 행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제7조 (권한)

위원회는 소장사무의 대행을 위해서 아래에 언급하는 권한을 갖는다. 단, 그 권한의 행사는 법률(하위 명령을 포함)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

- 1)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장(所掌)사무의 대행에 필요한 지출 부담 행위를 할 것
- 2) 수입금을 징수(徵收)해 소장사무의 대행에 필요한 지출을 할 것
- 3) 소장사무의 대행에 직접 필요한 사무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것
- 4) 소장사무 대행에 직접 필요한 업무용 자재, 도서 그 외 연구용 자재, 사무용품 등을 조달할 것
- 5) 직원의 임면(任免) 또는 별책을 행해 직원의 인사를 관리할 것

- 6) 직원의 후생 및 보건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없애고 또 관리 할 것
  - 7) 소장사무의 감찰을 행해 법률을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필요한 장치를 둘 것
  - 8) 소장사무의 주지선전(周知宣傳)을 할 것
  - 9) 위원회의 공인(公印)을 제정할 것
  - 10) 넓게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기록을 정비할 것
  - 11) 소장사무에 관계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 허가 또는 인가를 부여하고, 또는 그 허가를 취소할 것
  - 12) 소장사무에 관한 국고지출금을 할당해 배분할 것
  - 13) 소장사무에 관한 물자의 확보에 대해 원조(援助)할 것
  - 14) 소장사무에 관한 통계조사의 자료 및 결과를 수집해 해석하고 또 간행 배포할 것
  - 15) 소장사무에 관한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관심에 있는 제목에 대해 회의, 연구회, 토론회 등을 주최할 것
  - 16) 문화재보호에 관한 법령안을 작성할 것
  - 17) 전 각호에 언급한 것 외의 법률(이것을 기초로 한 명령을 포함) 에 의거해 위원회에 속하게 하는 권한
2. 위원회는 그 권한의 행사에 맞추어 법률(법률을 기초로 한 명령을 포함) 에 별단(別段)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행정상 혹은 운영상의 감독을 행하게 할 것

#### 제8조 (구성)

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 제9조 (위원의 임명 또는 결격사유)

위원은 문화에 관한 많은 의견을 가진 자로부터 양의원(兩議院)의 동의를 거쳐 문부대신이 임명한다.

2. 아래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지산자 또는 준금지산자 또는 파산자로 복권을 얻을 수 없는 자
  - 2)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자
3. 위원은 그 속의 3인 이상이 동일 정당에 속한 자로 되어 있지 않으면 될 수 없다.
4. 위원(위원장으로 있는 위원을 제외)은 비상동(非常動)한다.

####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결인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재임한다.

2. 위원은 재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제1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위원은 국회의 개회 또는 중의원의 해산의 경우에 임기가 만료됐을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소집된 국회에 의해 양의원의 동의를 거쳐 문부대신이 위원을 임명할 때까지의 사이에 먼저 재임하는 것으로 한다.

#### 제11조 (위원의 실적 또는 파면)

1. 위원은 제9조 제2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까지의 경우 또는 위원 중 2인이 소속돼 있는 정당에 확실하게 소속되기까지의 경우에 의해서 그 직을 잃는다.
2. 문부대신은 위원이 심신의 고장에 의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의 직무상의 의무 위반 그 외 위원들의 적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의원의 동의를 거쳐 이것을 파면할 수 있다.
3. 문부대신은 양의원의 동의를 거쳐 아래에 언급하는 위원을 파면한다.
  - 1) 위원 중 몇몇이 소속돼 있지 않은 하나의 정당에 대해서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소속할 때까지의 경우, 이들 안의자들 중 2명을 넘는 원수의 위원
  - 2) 위원들 중 한명이 소속돼 있는 정당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위원이 소속되어질 경우 이들 중의 한명을 넘는 원수의 위원

4. 양의원은 전항 각호에 규정된 파면해야 할 원수의 위원의 파면의 동의를 부여해야 한다.
5. 국회의 개회 또는 중의원의 해산을 위해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면에 대한 양의원의 동의를 거칠 수 없을 때에는 그 후 최초로 소집된 국회에 의해 양의원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 제12조 (위원장)

1.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해 정한다.
2. 위원장은 회무를 총리(總理)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에게 사고가 생겼을 때 또는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위원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 제13조 (위원의 급여)

위원장 또는 위원은 별도의 법률에 정해진 바에 의해 상당액의 급여를 받는다.

#### 제13조의 2 (위원장의 겸직 등의 제한)

위원장은 재임 중 문부대신의 허가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 보수를 얻어 타의 중무에 종사해 또는 영리사업을 운영해 그 외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행할 수 없다.

#### 제14조 (회의)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명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위원의 반수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
  3. 위원회의 의사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정해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제15조 (문화재 보호위원회 규칙)

1. 위원회는 법률로 특별히 정해 있을 경우 외, 문화재 보호위원회 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함) 을 정할 수 있다.
2. 위원회 규칙은 관보로 공포한다.

#### 제2절 사무국

#### 제16조 (사무국)

위원회는 소장사무를 대행하기 위해 국가행정조직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무국을 둔다.

#### 제17조 또는 제18조 소제

#### 제19조 (사무국장 또는 차장)

1. 위원회의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또는 차장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무국의 사무를 장리(掌理)해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3. 차장은 사무국장을 도와 사무국의 사무를 정리한다.

#### 제3절 부속기관 또는 사무국 출장소

#### 제20조 (부속기관)

위원회의 부속기관으로서 문화재전문심의회(文化財專門審議會), 국립박물관 또는 국립문화재 연구소를 둔다.

제21조 (문화재전문심의회)

1. 문화재전문심의회는 위원회의 자문에 응해서 문화재의 보존 또는 활용에 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을 조사 심의해 동시에 이들의 사항에 관해 필요와 인정된 사항을 위원회에 건의한다.
2. 위원회는 아래에 언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문화재전문심의회에 자문하지 않으면 안된다.
  - 1) 국보 또는 중요문화재의 지정 및 그 지정의 해제
  - 2) 중요문화재의 관리 또는 국보의 수리에 관한 명령
  - 3) 위원회에 의한 국보의 수리 또는 소실, 훼손 혹은 도난의 방지 장치의 시행
  - 4) 중요문화재의 현장변경 또는 수출(輸出)의 허가
  - 5) 중요문화재의 환경보전을 위해 제한 혹은 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명령
  - 6) 중요문화재의 매취(買取)
  - 7)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해제
  - 8)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지자(保持者)의 인정 및 그 인정의 해제
  - 9) 중요무형문화재 이외의 무형문화재 안의 위원회가 기록을 작성해야 할 것 이나 기록의 작성 등에 속한 보조해야 할 것의 선택
  - 10) 중요민속자료의 지정 및 그 지정의 해제
  - 11) 중요민속자료의 관리에 관한 명령
  - 12) 중요민속자료의 매취
  - 13) 무형의 민속자료 속의 위원회가 기록을 작성해야할 것 또는 기록의 작성 등에 속한 보조해야 할 것의 선택
  - 14) 위원회에 의한 이장문화재의 조사를 위해 발굴 시행
  - 15) 특별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그 지정의 해제
  - 16)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가지정의 해제
  - 17)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관리 또는 특별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복구에 관한 명령
  - 18) 위원회에 의한 특별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복구 또는 소실, 훼손, 멸망 또한 도난 방지의 장치 시행
  - 19)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 혹은 금지 혹은 필요한 시설의 명령
  - 20)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현장 변경 등의 허가
  - 21)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현장변경 등을 받지 않거나 혹은 그 허가의 조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또는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환경보전을 위한 허가 및 그 허가의 취소 권한의 도도부(都道府)현의 교육위원회에의 위임
3. 위원회는 전항각호에 언급하는 사항 외 문화재의 보존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의 중요라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전문심의회에 자문할 것으로 한다.
4. 전3항의 규정에 의해 소장하는 사항을 분장하기 위해서 문화재전문심의회에 분과회를 둔다.
5. 문화재전문심의회 및 그 분과회의 조직(組織) 또는 소장사무와 나란히 하는 전문위원, 임시전문위원 그 외의 직원에 대해서는 타의 법률에 특별히 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정령(政令)으로 인정한다.

제22조 (국립박물관)

1. 국립박물관은 유형문화재를 수집해 보관하고 공중의 관람을 합쳐서 이것에 관련된 사업을 행한다.
2. 국립박물관의 명칭과 위치는 아래에 있는 그대로이다.
3. 국립박물관의 내부 구성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국립문화재연구소)

1.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에 관한 조사연구, 자료의 작성 및 그 공표를 행한다.
2.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명칭과 위치는 아래에 있다.
3. 국립문화재연구소에는 지소를 둘 수 있다.
4. 국립문화재연구소 및 그 지소의 내부구조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사무국출장소)

위원회는 그 소장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기 위해서 소요의 지에 사무국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명적, 위치, 소장사무의 범위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직원

제25조 (직원)

위원회에 두어지는 직원의 임면, 승임, 징계 그 외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소화22년 법률 제120호) 및 그 특례에 관해서 규정하는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른다.

제26조 (정원)

위원회에 두어지는 직원의 정원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文化財保護の歩み』, 文化財保護委員會, 1960(昭和35).

[부록 3]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의한 보물 등록 고시.  
『조선총독부 관보』 제2290호, 1934. 8. 27.

# 朝鮮總督府官報

第二千二百九十號

昭和九年八月二十七日 月曜日

## ○訓令

朝鮮總督府訓令第三十六號  
臨時治水調査委員會規程ノ通定ム  
昭和九年八月二十七日

朝鮮總督 宇垣一成

- 第一條 朝鮮ニ於ケル治水ニ關スル重要ナル事項ヲ調査審議スルヲ朝鮮總督府ニ臨時治水調査委員會ヲ置ク
- 第二條 委員會ハ會長一人及委員二十人以内ヲ以テ之ヲ組織ス  
必要アルトキハ臨時委員ヲ置クコトヲ得
- 第三條 會長ハ朝鮮總督府政務總監ヲ以テ之ニ充ツ  
委員及臨時委員ハ朝鮮總督府部内高等官ノ中ヨリ之ヲ命ジ又ハ學識經驗アル者ノ中ヨリ之ヲ囑託ス
- 第四條 會長ハ會務ヲ總理ス  
會長事故アルトキハ會長ノ指定スル委員其ノ職務ヲ代理ス
- 第五條 委員會ニ幹事ヲ置ク朝鮮總督府高等官ノ中ヨリ之ヲ命ズ  
幹事ハ會長ノ指揮ヲ承ケ庶務ヲ整理ス
- 第六條 委員會ニ書記ヲ置ク朝鮮總督府判任官ノ中ヨリ之ヲ命ズ  
書記ハ上司ノ指揮ヲ承ケ庶務ニ従事ス

## ○告示

朝鮮總督府告示第四百三十號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第一條ニ依リ左ノ通指定ス  
昭和九年八月二十七日 朝鮮總督 宇垣一成

指定番號	名	種	員數	所	在	地	所有者ノ氏名及住所
第一號	京城南大門	一	一	京城道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	國	國	
第二號	京城東大門	一	一	京城道京城府東大門通六丁目	國	國	
第三號	京城西大門	一	一	京城道京城府西大門通六丁目	國	國	

朝鮮總督府官報 第二一九〇號 日刊(朝鮮總督府官報) 昭和九年八月二十七日(昭和九年八月二十七日) 第三種郵便物認可

第四號	開城山多層石塔	一基	京城道京城府東大門通四丁目三八番	國
第五號	開城山多層石塔	一基	京城道京城府東大門通四丁目三八番	國
第六號	開城山多層石塔	一基	京城道京城府東大門通四丁目三八番	國
第七號	開城山多層石塔	一基	京城道京城府東大門通四丁目三八番	國
第八號	開城山多層石塔	一基	京城道京城府東大門通四丁目三八番	國
第九號	開城山多層石塔	一基	京城道京城府東大門通四丁目三八番	國
第一〇號	開城山多層石塔	一基	京城道京城府東大門通四丁目三八番	國
第一一號	開城山多層石塔	一基	京城道京城府東大門通四丁目三八番	國
第一二號	開城山多層石塔	一基	京城道京城府東大門通四丁目三八番	國
第一三號	開城山多層石塔	一基	京城道京城府東大門通四丁目三八番	國
第一四號	開城山多層石塔	一基	京城道京城府東大門通四丁目三八番	國
第一五號	開城山多層石塔	一基	京城道京城府東大門通四丁目三八番	國
第一六號	開城山多層石塔	一基	京城道京城府東大門通四丁目三八番	國
第一七號	開城山多層石塔	一基	京城道京城府東大門通四丁目三八番	國
第一八號	開城山多層石塔	一基	京城道京城府東大門通四丁目三八番	國
第一九號	開城山多層石塔	一基	京城道京城府東大門通四丁目三八番	國
第二〇號	開城山多層石塔	一基	京城道京城府東大門通四丁目三八番	國
第二一號	開城山多層石塔	一基	京城道京城府東大門通四丁目三八番	國
第二二號	開城山多層石塔	一基	京城道京城府東大門通四丁目三八番	國
第二三號	開城山多層石塔	一基	京城道京城府東大門通四丁目三八番	國
第二四號	開城山多層石塔	一基	京城道京城府東大門通四丁目三八番	國
第二五號	開城山多層石塔	一基	京城道京城府東大門通四丁目三八番	國
第二六號	開城山多層石塔	一基	京城道京城府東大門通四丁目三八番	國
第二七號	開城山多層石塔	一基	京城道京城府東大門通四丁目三八番	國
第二八號	開城山多層石塔	一基	京城道京城府東大門通四丁目三八番	國

[부록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보 등록 고시.

『대한민국 관보』 제3333호, 1962. 12. 29.

# 官報

(一九五三年十一月三日제삼호우(농민가))

호 의  
一九六二年十二月二十九日  
공 보 부 발령

## 가 70

○法務部令第五五號  
少年院院生給與規程中改正의件을이에  
公布한다  
一千九百六十二年十二月二十九日  
法務部長官 趙炳日

少年院院生給與規程中改正  
의件  
少年院院生給與規程中改正  
의件  
第二條를다음과같이한다  
第二條 (主食) ①院生에게給與하는  
主食은白米三、大豆二、雜穀五의比  
率인混合으로하며一日一人當給與量  
은五合五勺으로한다  
②院長은特히必要하다고認定할때에  
는前項의混合率을變更하거나代用食  
을給與할수있으며疾病에전린院生에  
게는醫務官의意見을들어白米로만은  
발, 죽또는미음을給與한다  
附 則  
本令은千九百六十二年一月一日부터施

## 行한다

○交通部令第一四四號  
海難審判法施行期日에關한件을이에公  
布한다  
一千九百六十二年十二月二十九日  
交通部長官 朴春植

海難審判法은千九百六十二年十二月二  
十九日로부터施行한다  
附 則  
本令은公布한날로부터施行한다

## 고 시

○문화재보호법 제一六九호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三호의 규정  
에 의하여 국보로 재 지정된것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一 九六二年十二月二十九日  
문화부장관 박인경

指定番號	名	稱	所有者	所在地
第一號	서울남대문	一種國有	서울特別市南區南大門路四街	

차 次 目 録

● 부  
● 고  
시  
령  
법무부령제 五五호(少年院院生給與規程中改正의件)  
교통부령제 一四四호(海難審判法施行期日에關한件)  
문화부고시제 一六九호, 제 一七〇호, 제 一七一호  
농림부고시제 九九五호  
교통부고시제 八四二호, 제 八四三호  
전과관리국고시제 二五二호, 제 二五三호, 제 二五四호, 제 二五五호

第二號	圓覺寺址十層石塔	一基國有	서울特別市鍾路區鍾路二街	三八公園地
第三號	北漢山新羅眞興王巡狩碑	一基國有	京畿道高陽郡恩平面舊基里	山三林野
第四號	高靈寺址浮屠	一基國有	京畿道驩州郡北面七橋里	四一寺社地
第五號	法住寺雙蓮石燈	一基法住寺	忠清北道報恩郡俗離面舍乃里	二〇九寺社地
第六號	中原塔址七層石塔	一基國有	忠清北道中原郡可金面塔坪里	一一雜種地
第七號	奉先弘慶寺碑碣	一基國有	忠清南道天安郡成歡面大弘里	三二〇林野
第八號	聖住寺納靈和尙白日聖光塔碑	一基國有	忠清南道保寧郡嶺山面聖住里	八〇田
第九號	扶餘定林寺址五層石塔	一基國有	忠清南道扶餘郡扶餘面東南里	三七九雜種地
第十號	寶相寺百丈庵三層石塔	一基百丈庵	全羅北道南原郡山內面文井里寶相寺百丈庵內	九七雜種地
第十一號	彌勒寺址石塔	一基國有	全羅北道金山郡馬面黃隔里	二
第十二號	華嚴寺覺皇殿 앞 石燈	一基華嚴寺	全羅南道求禮郡馬山面黃田里華嚴寺內	二
第十三號	無爲寺佛果殿	一棟無爲寺	全羅南道康津郡城田面月下里無爲寺內	一、二畝
第十四號	銀海寺居祖庵	一棟銀海寺	慶尙北道水川郡清通面新源里銀海寺內	六、二二
第十五號	鳳停寺佛果殿	一棟鳳停寺	慶尙北道安東郡西後面台庄洞鳳停寺內	九〇一
第十六號	安重新世洞七層塔	一基國有	慶尙北道安東郡安東邑新世洞	八雜種地
第十七號	浮石寺無量壽殿 앞 石燈	一基浮石寺	慶尙北道榮州郡浮石面北枝里浮石寺內	一四八
第十八號	浮石寺無量壽殿	一棟浮石寺	慶尙北道榮州郡浮石面北枝里浮石寺內	一四八
第十九號	浮石寺祖師堂	一棟浮石寺	慶尙北道榮州郡浮石面北枝里浮石寺內	一五一
第二〇號	佛國寺多寶塔	一基佛國寺	慶尙北道慶州市進明里	一五寺社地
第二一號	佛國寺三層石塔	一基佛國寺	慶尙北道慶州市進明里	一五寺社地



[부록 6] 1916년, 1934년, 1962년 문화재 지정 등록 비교 표

지정번호	고적 및 유물 등록대상 기재물건 일람. 1924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 기념물보존령에 의거 지정된 보물목록.1934년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지정된 국보 목록.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지정된 보물 목록. 1963년
제 1 호	원각사지십층석탑	경성남대문	서울남대문	서울흥인지문
제 2 호	원각사비	경성동대문	원각사지십층석탑	서울보신각종
제 3 호	보신각종	경성보신각종	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 비	대원각사비
제 4 호	장 의 사 지 당 간 지 주	원각사지다층석탑	고달사지부도	중초사지당간지주
제 5 호	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 비	원각사비	법주사쌍사자석등	중초사지삼층석탑
제 6 호	중초사지당간지주	중초사당간지주	중원탑평리칠층석탑	고달사원종대사혜진탑 비귀부및이수
제 7 호	중초사지삼층석탑	중초사삼층석탑	봉선홍경사비갈	고달사원종대사혜진탑
제 8 호	중초사지마애종	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 비	성주사낭해화상백일보 광탑비	고달사지석불좌
제 9 호	광주구읍오층석탑	개성침성대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	서봉사현오국사탑비
제 10 호	광주구읍삼층석탑	개성남대문	실상사백장암삼층석탑	강화하점면오층석탑
제 11 호	삼전도청태종공덕비	개성연복사종	미륵사지석탑	여수진남관
제 12 호	창성사지진각국사비	관음사대웅전	화엄사각황전앞석등	광주춘궁리오층석탑
제 13 호	고달사지원종대사혜진 탑	고달사원종대사혜진탑 비귀부및이수	무위사극락전	광주춘궁리삼층석탑
제 14 호	고달사지원종대사혜진 탑비	고달사원종대사혜진탑	은혜사거조암영산전	창성사진각국사대각원 조탑비
제 15 호	고달사지승탑	고달사지부층	봉정사극락전	법주사사천왕석등
제 16 호	고달사지귀부	고달사지석불좌	안동신세동칠층석탑	억정사대지국사비
제 17 호	고달사지석불좌	서봉사지현오국사탑비	부석사무량수전앞석등	정토사법경대사자등탑 비
제 18 호	여주하리삼층석탑	강화하점면오층석탑	부석사무량수전	정산서정리구층석탑
제 19 호	여주창리삼층석탑	강화동종	부석사조사당	성주사지오층석탑
제 20 호	보제사사지대경대사현 기탑비	광주춘궁리오층석탑	불국사다보탑	성주사지중앙삼층석탑

지정번호	1916년	1934년	1962년	1963년
제 21 호	파주호미리이체석불상	광주춘궁리삼층석탑	불국사삼층석탑	당유인원기공비
제 22 호	서봉사지현오국사탑비	창성사진각국사대각원조탑비	불국사연화교칠보교	금산사노주
제 23 호	영통사지대각국사비	법주사쌍사석등	불국사청운교백운교	금산사석련대
제 24 호	영통사지오층석탑	법주사사천왕석등	석굴암석굴	금산사혜덕왕사진응탑비
제 25 호	영통사지동삼층석탑	덕정사대지국사비	신라태종무열왕릉비	금산사오층석탑
제 26 호	영통사지서삼층석탑	정토사법경대사자등탑비	불국사금동비로자나불좌상	금산사방등계단
제 27 호	현화사비	충주탑정리칠층석탑	불국사금동아미타여래좌상	금산사육각다층석탑
제 28 호	현화사지칠층석탑	봉선홍경사비	백률사금동약사여래입상	금산사당간지주
제 29 호	개성첨성대	정산서정리구층석탑	성덕대왕신종	금산사심원암북강삼층석탑
제 30 호	선죽교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분황사석탑	만복사지오층석탑
제 31 호	강화종각종	성주사지오층석탑	경주첨성대	만복사지석좌
제 32 호	강화화점면오층석탑	성주사지증양삼층석탑	해인사대장경판	만복사지당간지주
제 33 호	용두사지칠당간	부여평백제탑	창녕신라진흥왕척경비	실상사수철화상능가보월탑
제 34 호	충주탑정리칠층석탑	당유인원기공비	창녕술정리동삼층석탑	실상사수철화상능가보월탑비
제 35 호	정사사지법경대사자등탑비	금산사노주	화엄사사삼층석탑	실상사석등
제 36 호	충주남문의칠불상	금산사석련대	상원사동종	실상사부도
제 37 호	역정사지대지국사비	금산사혜덕왕사진응탑비	경주구황리삼층석탑	실상사삼층석탑
제 38 호	월광사지원랑선사대보선광탑비	금산사오층석탑	고선사지삼층석탑	실상사증각대사용료탑
제 39 호	사자빈신사지사층석탑	금산사석종	월성나원리오층석탑	실상사증각대사용료탑비
제 40 호	피산신보리마애이체불상	금산사육각다층석탑	정혜사지십삼층석탑	실상사백장암석등

지정번호	1916년	1934년	1962년	1963년
제 41 호	괴산미륵당리석불상	금산사당간지주	용두사지철당간	실상사철계여래좌상
제 42 호	괴산미륵당리오층석탑	금산사심원암북강삼층석탑	목조삼존불감	용담사지석불입상
제 43 호	부여읍남오층석탑(평백제탑)	만복사지오층석탑	고려고종제서	만복사지석불입상
제 44 호	부여읍남석불상 보	만복사지석좌	보림사삼층석탑및석등	익산왕궁리오층석탑
제 45 호	유인원기공비	만복사지당간지주	부석사소조여래좌상	익산연동리석불좌상
제 46 호	부여읍내석조	실상사수철화상능가보월탑	부석사조사당벽화	익산고도리석불입상
제 47 호	부여읍내석조	실상사수철화상능가보월탑비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	성주사지서삼층석탑
제 48 호	보광사중?비	실상사석등	월정사팔각구층석탑	대홍사북미륵암마애여래좌상
제 49 호	강당사지법인국사보병탑	실상사부도	불국사금동비로자나불좌상	나주동문외석당간
제 50 호	강당사지법인국사보병탑비	실상사삼층석탑	불국사금동아미타여래좌상	나주북문의삼층석탑
제 51 호	강당사지?불상	실상사증각대사용료탑	강릉객사문	문경내화리삼층석탑
제 52 호	강당사지오층석탑	실상사증각대사용료탑비	해인사장경판전	봉화서동리삼층석탑
제 53 호	강당사지당간지주	실상사백장암석등	연곡사동부도	개심사지오층석탑
제 54 호	강당사지석조	실상사백장암삼층석탑	연곡사북부도	고령지산동당간지주
제 55 호	안국사지삼체석불상	실상사철계여래좌상	법주사팔상전	봉정사대웅전
제 56 호	안국사지석탑	용담사지석불입상	송광사국사전	안동동부동오층전탑
제 57 호	성주사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만복사지석불입상	쌍봉사청감선사탑	안동조탑동오층전탑
제 58 호	성주사지오층석탑	익산왕궁리오층석탑	장곡사철조약사여래좌상부석조대좌	안동안기동석불좌상
제 59 호	성주사지중앙삼층석탑	미륵사지석탑	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비	숙수사지당간지주
제 60 호	성주사지서삼층석탑	익산석불리석불좌상	청자사자유개향로	영주리석불입상

지정번호	1916년	1934년	1962년	1963년
제 61 호	봉선홍경사갈	익산고도리석불입상	청자비룡형주자	불국사사리탑
제 62 호	천홍사지당간지주	성주사지서삼층석탑	금산사미륵전	경주서악리마애석불상
제 63 호	청양읍내삼층석탑	화엄사각황전전석등	도피안사철조비로자나불상	경주배리석불입상
제 64 호	청양읍내삼체석불상	대흥사북미륵암마애여라좌상	법주사석연지	경주보문리석조
제 65 호	정산서정리구층석탑	나주동문의석당간	청자기린유개향로	경주서악리삼층석탑
제 66 호	개봉사지삼체석불상	나주북문의삼층석탑	청자상감유죽연로원앙문정병	경주석빙고
제 67 호	개봉사지철부	무위사극락전	화엄사각황전	경주효현리삼층석탑
제 68 호	서천봉남리삼층석탑	은혜사거조암영산전	청자상감운학문호	경주황남리효자손시양정러비
제 69 호	미륵사지당간지주	문경내화리삼층석탑	개국원종공신록권	망덕사지당간지주
제 70 호	미륵사지석탑	봉화서동리삼층석탑	훈민정음	경주서악리귀부
제 71 호	익산석불리석불상	개심사지오층석탑	동국정운권1권6	함안대산리석불
제 72 호	익산고도리쌍석불상	고영지산동당간지주	금동계미명삼존불	단속사지동삼층석탑
제 73 호	만복사지석불상	봉정사극락전	금동삼존불감	단속사지서삼층석탑
제 74 호	만복사지오층석탑	봉정사대웅전	청자압형수적	통도사국장생석표
제 75 호	만복사지석좌	안동동부동오층전탑	표층사청동함은향완	창녕송현동석불좌상
제 76 호	만복사지당간지주	안동신세동칠층전탑	이충무공난중일기부서간첩입진장초	춘천근화동당간지주
제 77 호	용담사지석불상	안동조탑동오층전탑	의성탑리오층석탑	춘천칠층석탑
제 78 호	용담사지칠층석탑	안동안기동동불상	금동미륵보살반가상	거둔사원공국사승묘탑비
제 79 호	용담사지석탑	부석사대웅전전석등	경주구황리금제여래좌상	홍천희망리삼층석탑
제 80 호	나주북문의삼층석탑	부석사무량수전	경주구황리금제여래입상	홍천희망리당간지주

지정번호	1916년	1934년	1962년	1963년
제 81 호	나주동문외석당간	부석사조사당	감산사석조미륵보살입상	한송사지석불상
제 82 호	나주서무내석등	숙수사지당간지주	감산사석조아미타불입상	강릉대창리당간지주
제 83 호	개선사지석등	영주영주리석불입상	금동미륵보살반가상	강릉수문리당간지주
제 84 호	광주읍동오층석탑	불국사다보탑	서산마애삼존불상	신복사지석불좌상
제 85 호	광주읍서오층석탑	불국사삼층석탑	금동신묘명삼존불	굴산사지부도
제 86 호	광주북문외석불상	불국사사리탑	경천사십층석탑	굴산사지당간지주
제 87 호	광주읍내철불상	불국사연화교칠보교	금관총금관	신복사지삼층석탑
제 88 호	신라무열왕릉비이수및 귀부	불국사청운교백운교	금관총과대묘요패	탑산사동종
제 89 호	신라성덕왕신종	석굴암석굴	금제교구	도갑사석조여래좌상
제 90 호	경주첨성대	경주서악리마애석불상	금대태환이식	송광사대만열반경소
제 91 호	굴불사지석각불상	경주배리석불입상	도제기마인물상	여주창리삼층석탑
제 92 호	경주석빙고	신라태종무열왕릉비	청동은입사포유수금문 정병	여주하리삼층석탑
제 93 호	00사지미타전비이수 귀부	경주보문리석조	백자철화포도문호	파주용미리석불입상
제 94 호	00사지석탑	경주서악리삼층석탑	청자소문과형병	사자빈신사지석탑
제 95 호	고선사지삼층석탑	경주석빙고	청자칠보투각향로	괴산미륵리오층석탑
제 96 호	경주읍내석불상	불국사금동노사나불좌상	청자귀형수병	괴산미륵리석불입상
제 97 호	망덕사지당간지주	불국사금동아미타여래 좌상	청자음각연화당초문매 병	괴산원풍리마애불좌상
제 98 호	정혜사지십층석탑	백울사금동약사여래입상	청자상감복단문항	충주철불좌상
제 99 호	경주서악리삼층석탑	경주성덕왕신종	갈항사삼층석탑	천홍사지당간지주
제 100 호	경주남산리삼층석탑	분황사석탑	남계원철층석탑	안국사지석불입상

지정번호	1916년	1934년	1962년	1963년
제 101 호	경주나원리오층석탑	평양성벽석각	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	안국사지석탑
제 102 호	태자사낭공대사백월서 운탑비	경주효현리삼층석탑	정토사흥법국사실상탑	보원사지석조
제 103 호	숙수사지당간지주	경주황남리효자손시양 정려비	중흥산성쌍사석등	보원사지당간지주
제 104 호	영주사현정리당간지주	망덕사지당간지주	전흥법사염거화상탑	보원사지오층석탑
제 105 호	영주영주리석불상	경주첩성대	산청법화리삼층석탑	보원사법인국사보승탑
제 106 호	개심사지오층석탑	경주서악리귀부	계유명전씨아미타불삼 존불상	보원사법인국사보승탑 비
제 107 호	동사지삼층석탑	함안대산리석불	이조백자철사포도문호	보광사대보광선사비
제 108 호	동사지석불상	단속사지동육층석탑	계유명삼존천불비상	부여정림사지석불좌상
제 109 호	상주화달리삼층석탑	단속사지서육층석탑	군위삼존석굴	광주서오층석탑
제 110 호	상주지사리전탑	통도사국장생석표	익제영정	광주동오층석탑
제 111 호	문경내화리삼층석탑	해인사대장경관	회현영정	개천사지석등
제 112 호	고령괘빈동삼층석탑	창녕신라진흥왕척경비	감은사지삼층석탑	중흥산성삼층석탑
제 113 호	고령지산동당간지주	창녕술정리동삼층석탑	화청자양류문통형병	청도봉기동삼층석탑
제 114 호	청도송서동삼층석탑	창녕송현동석각불좌상	청자상감목단국화문과 형병	안동옥동삼층석탑
제 115 호	창녕읍내신라진흥왕척 경비	청평사극락전	청자상감당초문완	안동이천동석불상
제 116 호	통도사국장생석표	춘천전평리당간지주	청자상감목단문표형병	영주석교리석불상
제 117 호	월광사지삼층석탑	춘천요선당리칠층석탑		상주화달리삼층석탑
제 118 호	봉산지답리삼층석탑	풍천원석등		상주증춘리석불입상
제 119 호	광조사지진철대사보월 승공탑비	거둔사지원공국사승묘 탑비		상주복용리석불좌상
제 120 호	해주백세청풍비	장안사사성전		상주증춘리석불좌상

지정번호	1916년	1934년	1962년	1963년
제 121 호	해주타나미석당	홍천희망리삼층석탑		굴불사지석불상
제 122 호	평양성벽석각	홍천희망리당간지주		경주두대리마애석불입상
제 123 호	평양기자정	한송사석불상		경주보문리당간지주
제 124 호	평양정차장전칠층석탑	강릉대창리당간지주		경주남산리삼층석탑
제 125 호	평양종각종	강릉수문리당간지주		무장사아미타불조상사적비이수및귀부
제 126 호	점선현사산비	신복사지석불좌상		무장사지삼층석탑
제 127 호	자복사지오층석탑	굴산사지부도		경주삼량사지당간지주
제 128 호	용천타라니석당	굴산사지당간지주		반야사원경왕사비
제 129 호	용천서문외석당	심원사0광전		월광사지삼층석탑
제 130 호	용천읍내이체석불상	성불사극락전		용감수경<제3권,4권>
제 131 호	용천읍내쌍석수	성불사웅진전		증심사철조비로자나불좌상
제 132 호	풍천원석등	광조사지진철대사보월승공탑비		화엄사동오층석탑
제 133 호	황초령신라진홍왕순수비	해주백세정풍비		화엄사서오층석탑
제 134 호	북천너진자석각	해주읍내석빙고		경길
제 135 호	백두산정계표	해주타라니석간		석조부도
제 136 호	경원너진자비	대동문		경주남산미륵곡석불좌상
제 137 호	연복사종	부벽루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
제 138 호	익산왕궁오층석탑	보통문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
제 139 호	왕복사지이왕석상	평양동종		월정사석조보살좌상
제 140 호	홍덕왕릉석수	신복사지삼층석탑		오대산상원사증창권선문

지정번호	1916년	1934년	1962년	1963년
제 141 호	경주읍내석수	성천치인리오층석탑		서울문묘<대성전,명륜당,동무,서무,삼문>
제 142 호	성천치인리삼층석탑	성천자복사지오층석탑		서울동묘
제 143 호	경주서악리마애석불상	점선현비		개십사대웅전
제 144 호	영주사현정리삼층석탑	용천구읍내석불입상		통도사대웅전
제 145 호	영주석교리삼체석불상	용천구읍내석수		용문사대장전
제 146 호	안동신세동칠층벽탑	황초령신라진흥왕순수비		관룡사약사전
제 147 호	안동동부동오층벽탑	석왕사용진전		밀양영남루
제 148 호	안동조탑동오층벽탑	석왕사호특전		공주중동석조
제 149 호	안동왕리동삼층석탑	탑산사동종		공주반죽동석조
제 150 호	안동안기동동불상	도선사석제여래좌상		공주반죽동당간지주
제 151 호	안동이송천동석불상	화엄사삼층사석탑		연곡사삼층석탑
제 152 호	상주조촌리석각불상	송광사대반열반경소		연곡사현각선사탑비
제 153 호	상주조촌리석불상	상원사동종		연곡사동부도비
제 154 호	상주북룡리석불상			연곡사서부도
제 155 호	봉화서동리삼층석탑			보림사동부도
제 156 호	창녕술정리동삼층석탑			보림사서부도
제 157 호	창녕송현동석불상			보림사보조선사창성탑
제 158 호	창녕교동석불상			보림사보조선사창성탑비
제 159 호	봉림사지진경대사보월 룽공탑비			방어산마애불
제 160 호	하동신흥리수증석각			유성룡종손가문적

지정번호	1916년	1934년	1962년	1963년
제 161 호	반약사지원경왕사비			정수사법당
제 162 호	함안대산리삼채석불상			장곡사상대웅전
제 163 호	단속사지동동구석각			쌍봉사대웅전
제 164 호	단속사지동삼층석탑			청평사회전문
제 165 호	단속사지서삼층석탑			강릉오죽헌
제 166 호	남해양아리석각			서울홍제동오층석탑
제 167 호	해주읍내석빙고			정읍은선리삼층석탑
제 168 호	신복사지삼층석탑			경주천군리삼층석탑
제 169 호	신복사지석불상			봉암사삼층석탑
제 170 호	한송사지석불상			쌍봉사철감선사탑비
제 171 호	강릉수문리당간지주			봉암사정진대사원오탑
제 172 호	강릉수문리석불상			봉암사정진대사원오탑 비
제 173 호	굴산사지석탑			망해사지석조부도
제 174 호	굴산사지당간지주			장곡사철조비로자나불 좌상부석조대좌
제 175 호	굴산사지석불상			송광사경패
제 176 호	굴산사지석불상			송광사금동요령
제 177 호	강릉대창리석불상			서울사직단정문
제 178 호	강릉대창리당간지주			전등사대웅전
제 179 호	영랑비초석			전등사약사전
제 180 호	거돈사지원공국사승묘 탑비			신록사조사당

지정번호	1916년	1934년	1962년	1963년
제 181 호	홍법사지삼층석탑			장곡사하대웅전
제 182 호	평창유동리오층석탑			안동임청각
제 183 호	훈천선요선당리칠층석 탑			강릉해운정
제 184 호	훈천진평리당간지주			부여장하리삼층석탑
제 185 호	훈천우두리석불상			무량사오층석탑
제 186 호	-----			경주남산용장사곡삼층 석탑
제 187 호	서림사지삼층석탑			경주남산용장사곡석불 좌상
제 188 호	서림사지석불상			의성관덕동삼층석탑
제 189 호	장연사지삼층석탑			송림사오층전탑
제 190 호	준양현리삼층석탑			거둔사원공국사승묘탑
제 191 호	안풍사지오층석탑			보현사낭원대사오진탑
제 192 호	홍천희망리삼층석탑			보현사낭원대사오진탑 비
제 193 호	홍천희망리당간지주			운문사금당앞석
제 194 호				부여석조
제 195 호				금동관세음보살입상
제 196 호				금동석가여래입상
제 197 호				청양석조삼존불입상
제 198 호				경주남산불곡석불좌상
제 199 호				경주남산신선암마애보 살반가상
제 200 호				경주남산칠불암마애석 불

지정번호	1916년	1934년	1962년	1963년
제 201 호				경주남산탑곡마애조상 군
제 202 호				의성관덕동석사자
제 203 호				청도박곡동석조석가여 래좌상
제 204 호				송광사묘법연화경관세음 보살보문품삼현원찬과
제 205 호				송광사대승아비달마잡 집론소
제 206 호				송광사묘법연화경찬술
제 207 호				송광사금강반야경소개 현초
제 208 호				운문사동호
제 209 호				회덕동춘당
제 210 호				도산서원진교당
제 211 호				도산서원상덕사부경문 및사주토병
제 212 호				관룡사대웅전
제 213 호				삼척죽서루
제 214 호				강릉문묘대성전
제 215 호				북한산구기리마애석가 여래좌상
제 216 호				법주사마애여래의상
제 217 호				대조사석조미륵보살입 상
제 218 호				관촉사석조미륵보살입 상
제 219 호				개태사지석불입상
제 220 호				영주북지리석조여래좌 상

지정번호	1916년	1934년	1962년	1963년
제 221 호				영주가흥리마애삼존불상
제 222 호				합천치인리마애불입상
제 223 호				도피안사삼층석탑
제 224 호				비인오층석탑
제 225 호				신록사다층석탑
제 226 호				신록사다층전탑
제 227 호				창녕탑금당치성문기비
제 228 호				신록사보제존자석종
제 229 호				신록사보제존자석종비
제 230 호				신록사대장각기비
제 231 호				신록사보제존자석종앞석등
제 232 호				관촉사석등
제 233 호				무량사석등
제 234 호				옥구발산리석등
제 235 호				장의사지당간지주
제 236 호				미륵사지당간지주
제 237 호				청자순화4년명호
제 238 호				백자박산향로
제 239 호				상감초화문병
제 240 호				백자투조모란문호

지정번호	1916년	1934년	1962년	1963년
제 241 호				청화백자철사진사국화문병
제 242 호				개목사원통전
제 243 호				동화사입구마애불좌상
제 244 호				동화사비로암석조비로자나불좌상
제 245 호				오봉동석조석가여래좌상
제 246 호				고운사석조석가여래좌상
제 247 호				동화사비로암삼층석탑
제 248 호				동화사금당암삼층석탑
제 249 호				부석사삼층석탑
제 250 호				범어사삼층석탑
제 251 호				선봉사대각국사비
제 252 호				보경사원진국사비
제 253 호				청량사석등
제 254 호				동화사당간지주
제 255 호				부석사당간지주
제 256 호				감사월당간밧지주
제 257 호				감사부도
제 258 호				석조부도
제 259 호				수종사부도내유물
제 260 호				미암일기<판목포함>

지정번호	1916년	1934년	1962년	1963년
제 261 호				충재일기
제 262 호				근사록
제 263 호				송광사하사당
제 264 호				해인사석조여래입상
제 265 호				청량사석조석가여래좌상
제 266 호				청량사삼층석탑
제 267 호				임실용암리석등
제 268 호				분청사기연화문편호
제 269 호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제1>
제 270 호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제6>
제 271 호				마지은니수능엄경<권 제10>
제 272 호				장수향교대성전
제 273 호				대안사적인선사조륜청 정탑
제 274 호				대안사광자대사탑
제 275 호				대안사광자대사비
제 276 호				발산리오층석탑
제 277 호				내소사고려동종
제 278 호				법화경절본사본
제 279 호				선운사금동보살좌상
제 280 호				선운사지장보살좌상

지정번호	1916년	1934년	1962년	1963년
제 281 호				광한루
제 282 호				고달사지쌍사자석등
제 283 호				금보
제 284 호				금동여래입상
제 285 호				금동보살입상
제 286 호				청자상감포도동자문매 병
제 287 호				분청박지화문병
제 288 호				동계은입사항완
제 289 호				피향정
제 290 호				선운사대웅전
제 291 호				내소사대웅보전
제 292 호				개암사대웅
제 293 호				세병관
제 294 호				승안사지삼층석탑
제 295 호				관룡사용선대석조석가 여래좌상
제 296 호				청암사수도암약광전석 불좌상
제 297 호				청암사수도암삼층석탑
제 298 호				월남사지삼층석탑
제 299 호				화엄사대웅전
제 300 호				화엄사원통전전사자탑

지정번호	1916년	1934년	1962년	1963년
제 301 호				대흥사북미륵암삼층석탑
제 302 호				송광사약사전
제 303 호				송광사영산전
제 304 호				별교홍교
제 305 호				안동석빙고
제 306 호				안동양진당
제 307 호				청암사수도암석조비로 자나불좌상
제 308 호				풍남문
제 309 호				천곡사지칠층석탑
제 310 호				창녕석빙고
제 311 호				금계일기
제 312 호				소테리오층석탑
제 313 호				월남사지진각국사비
제 314 호				취지금니묘법연화경
제 315 호				백지묵서묘법연화경
제 316 호				운문사원웅국사비
제 317 호				운문사석조여래좌상
제 318 호				운문사사천왕석주
제 319 호				직지사석조약사여래좌상
제 320 호				대흥사응진전전삼층석탑

지정번호	1916년	1934년	1962년	1963년
제 321 호				지정4년명고려청동루은항로
제 322 호				관덕정
제 323 호				청도석빙고
제 324 호				여수진남관
제 325 호				송림사오층전탑내유물
제 326 호				이충무공유물
제 327 호				의성빙산사지오층석탑
제 328 호				금동약사여래입상
제 329 호				군수리석조여래좌상
제 330 호				군수리금동미륵보살입상
제 331 호				방형대좌금동미륵보살반가상
제 332 호				춘궁리철조석가여래좌상
제 333 호				금동보살입상
제 334 호				통도사은입사동계항로
제 335 호				석조여래좌상
제 336 호				정지장군환삼
제 337 호				장곡사금동약사여래좌상
제 338 호				금령총금관
제 339 호				서봉총금관
제 340 호				철채백화삼엽문매병

지정번호	1916년	1934년	1962년	1963년
제 341 호				청자상감모란문표형병
제 342 호				청자상감복사문매병
제 343 호				문양전
제 344 호				청자양각위려수금문정병
제 345 호				백자상감모란문매병
제 346 호				청자상감진사모란문매병
제 347 호				청자상감유어문매병
제 348 호				분청사기모란문반합
제 349 호				청자상감모자합
제 350 호				도동서원강당사당부장원
제 351 호				석조부도
제 352 호				감지은니묘법연화경 <제7>
제 353 호				영암사지쌍사자석등
제 354 호				천흥사지오층석탑
제 355 호				홍성신경리마애석불
제 356 호				무량사극락전
제 357 호				경도사지오층석탑
제 358 호				영전사지보제존자사리 탑
제 359 호				정토사흥법국사실상탑 비
제 360 호				월광사원랑선사탑비

지정번호	1916년	1934년	1962년	1963년
제 361 호				보리사대경대사탑비
제 362 호				봉림사진경대사보월능 공탑
제 363 호				봉림사진경대사보월능 공탑비
제 364 호				나주서문석등
제 365 호				홍법사진공대사탑부석 관
제 366 호				감은사지서삼층석탑내 유물
제 367 호				기축명아미타여래제불 보살석상
제 368 호				미륵보살반가석상
제 369 호				석남사부도
제 370 호				간월사지석조여래좌상
제 371 호				단성석조여래좌상
제 372 호				용암사지부도
제 373 호				보천사지삼층석탑
제 374 호				울곡사대웅전
제 375 호				함양마천면마애여래입 상
제 376 호				함양석조여래좌상
제 377 호				거창양평동석조여래입 상
제 378 호				거창상동석조관음입상
제 379 호				진양효자리삼층석탑
제 380 호				쌍계사부도

지정번호	1916년	1934년	1962년	1963년
제 381 호				합천 백암리석등
제 382 호				청송사지삼층석탑
제 383 호				돈화문
제 384 호				홍화문
제 385 호				창경궁명정문및행각
제 386 호				옥천교